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

2022. 10.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 병 목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책임연구원

서 동 연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10
1. 배당소득의 범위	10
2.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제도	13
가. 배당소득 과세 방법	13
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15
다.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정 연혁	19
3.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제도	22
가. 배당소득 과세 방법	22
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3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 연혁	32
III.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38
1. 미국	38
가. 배당소득의 범위	38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41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44
2. 호주	47
가. 배당소득의 범위	47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48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55

3. 영국	58
가. 배당소득의 범위	58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61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68
4. 독일	72
가. 배당소득의 범위	72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74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78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81
1. 국제비교	81
가. 개인주주의 배당소득과세제도	81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83
다.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분석	87
라.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94
마.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분석	101
2. 시사점	108
가. 개인주주의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	108
나. 이중과세조정제도의 복잡성	110
다. 현행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검토	112
참고문헌	117

표 목차

〈표 II-1〉 소득세 기본세율	15
〈표 II-2〉 배당세액공제율 개정 연혁	21
〈표 II-3〉 법인세율 개정 연혁	22
〈표 II-4〉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3
〈표 II-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24
〈표 II-6〉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28
〈표 II-7〉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29
〈표 II-8〉 익금불산입 차감 조정 대상 차입금 지급이자	32
〈표 II-9〉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개정 연혁	35
〈표 III-1〉 미국의 장기자본이득세율(2022년)	42
〈표 III-2〉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2022년)	42
〈표 III-3〉 호주 소득세율(2021~2022년 과세 연도)	49
〈표 III-4〉 호주 법인세율	56
〈표 III-5〉 영국의 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 및 배당소득세율	62
〈표 III-6〉 배당소득 및 그 외 종합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세율 적용 사례(영국)	65
〈표 III-7〉 영국의 2016년 이후 배당소득세율 변화	68
〈표 III-8〉 독일의 종합소득세율(2022년)	76
〈표 IV-1〉 주요국의 개인주주 배당소득과세제도	83
〈표 IV-2〉 주요국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86

〈표 IV-3〉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한국)	88
〈표 IV-4〉 법인기업 개인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한국)	89
〈표 IV-5〉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미국)	91
〈표 IV-6〉 법인기업 개인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미국)	91
〈표 IV-7〉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영국)	93
〈표 IV-8〉 법인기업 개인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영국)	93
〈표 IV-9〉 주요국의 법인주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요건 및 배제대상 비교	97
〈표 IV-10〉 주요국의 법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비교	100
〈표 IV-11〉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한국)	102
〈표 IV-12〉 법인기업 법인주주(지주회사)의 총 부담세액 계산(한국)	103
〈표 IV-13〉 법인기업 법인주주(일반법인)의 총 부담세액 계산(한국)	104
〈표 IV-14〉 법인기업 법인주주의 총 부담세액 계산(미국)	105
〈표 IV-15〉 법인기업 법인주주의 총 부담세액 계산(영국)	106

I. 서론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한 후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주에게 배당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중 과세가 발생함

- 법인 원천소득에 대하여 배당 지급법인 및 주주단계에서의 이중과세는 다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¹⁾
 -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기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호하게 됨
 -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한 번 과세되지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두 번 과세되므로 기업 형태에 따라서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함
 - 이중과세로 인해 자기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이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므로 타인자본 조달을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킴

-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함으로써 주주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 배당 정책 및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정 범위에 따라 완전통합 방법과 부분통합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김진수(2007), pp. 6~7

- 완전통합방법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와 주주단계에서 부담하는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식이며, 부분통합방법은 법인단계 또는 주주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임²⁾
 - 완전통합방법은 조합과세방식(partnership method)과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 method)이 있음
 - 조합과세방식은 주주를 공동사업의 조합원으로 보아 각 출자 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귀속시켜 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임
 - 자본이득방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주주단계에서 배당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임
 - 부분통합방법은 법인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과 주주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음
 - 법인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지급배당공제 또는 지급배당경감 방식이 있음
 - 지급배당공제는 배당도 지급이자와 같이 자본비용으로 보아 배당분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지급배당경감은 법인원천소득 중 사내 유보분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배당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주주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임퓨테이션, 수입배당공제, 수입배당세액공제 방식이 있음
 - 임퓨테이션은 주주가 수령한 배당과 그 배당에 대해 부담한 법인세액을 주주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주주단계의 세액을 산출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임
 - 수입배당공제는 주주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이고, 수입배당세액공제는 주주의 세액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 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주주의 경우 임퓨테이션 방식, 법인주주의 경우 수입배당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 김진수(2007), pp. 34~42

-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의 경우, 법인세율의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귀속 법인세를 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조정이 불완전하고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율에 역진성 문제가 있음³⁾
 -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에 비해 익금불산입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인 종류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과 보유요건 등 적용 요건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⁴⁾
- 본 보고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 방법을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보고서는 제I장의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를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조사국인 미국, 호주, 영국, 독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국 간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

3) 이영환(2020), pp. 103~104

4) 이종교·황남석(2021), pp. 263~265

II.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⁶⁾
- ④ 의제배당⁷⁾
- 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⁸⁾로부터의 이익

5) 「소득세법」 제17조: 임상엽·정정은 『세법개론』, 2021, p. 325

6)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시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하였음.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

7) 의제배당은 법인의 잉여금이 특정한 유형으로 주주에게 귀속됨에 따라 이익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6조에서는 의제배당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불균등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소각 또는 감자·해산·합병·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8)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다만, 요건을 갖춘 적격집합투자기구⁹⁾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 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¹⁰⁾으로 한정함^{11), 12)}

- ⑦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¹³⁾
- ⑧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조세피난방지세제에 따라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⑩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⑪ 상기 ①~⑨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¹⁴⁾
- ⑫ 상기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¹⁵⁾

□ 다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¹⁶⁾

- 「공익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¹⁷⁾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이익

-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
- 9)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
-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 제3항
- 11) 단서조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12) 「2022년 세계개편안」에서는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음(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3)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함
- 14)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15)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16)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2021, p. 329
- 17)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¹⁸⁾
 - 65세 이상인 거주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¹⁹⁾
 - 장기 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²⁰⁾
 - 농민·어민을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에 한함)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²¹⁾
 -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²²⁾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의 합계액(400만원·200만원 이하)²³⁾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²⁴⁾
- 다만 배당가산을 적용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 법인세를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 금액으로 함
 - 귀속법인세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배당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음
-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純資産) 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함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금액을 익금으로 함²⁵⁾

18)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19)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2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9항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함

2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4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8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24)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25)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봄²⁶⁾

2.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제도

가. 배당소득 과세 방법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²⁷⁾
 -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²⁸⁾
-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²⁹⁾
 - 일반적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다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임³⁰⁾
-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 또는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됨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의 저율 분리과세
 -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의 저율 분리과세

26)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3호

27)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28)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29) 「소득세법」 제130조

3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배당·이자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되는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³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임³²⁾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제외한 배당 및 이자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됨
 - 다음의 배당·이자 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임
 -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이자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배당·이자 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종합과세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함
 - 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임

31)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2021, pp. 333~335

32) 국내에서 지급받은 다음의 배당 및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① 2017. 12. 31. 이전에

〈표 II-1〉 소득세 기본세율

(단위: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배당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음

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1) 임퓨테이션 제도의 개요

□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임퓨테이션(그로스업)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임퓨테이션 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배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이하 '귀속법인세')을 배당소득 총 수입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방식임

- 즉, 배당소득 산정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gross-up)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함
 - 배당가산율은 10%의 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함³³⁾
 - 배당가산율 = (법인세율/(1-법인세율)) = (0.1/(1-0.1)) ≒ 0.11
 - 귀속법인세 = 이중과세조정 대상 배당소득 × 0.11

2) 조정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³⁴⁾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가산을 적용하는 배당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임³⁵⁾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그로스업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 배당가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일 것
 -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분일 것³⁶⁾

33) 현재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인 4단계 누진 구조임

34) 국세청(2020), pp. 129~130

3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동업기업 과세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가산을 적용함

36)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³⁷⁾
 -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부터의 이익³⁸⁾
 - 다음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 자기주식(출자지분)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1%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전입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법인세 면제 등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³⁹⁾
 - 분리과세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파생결합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인 경우라도 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음

37)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38)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39)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bullet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함

- 따라서 이중과세조정 대상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과 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 중 작은 금액임
 - 이중과세조정 대상 배당소득 = $\text{Min}[\text{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text{중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 2\text{천만원})]$

3) 배당세액공제

- 조정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더한 금액이 배당소득임⁴⁰⁾
- 중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함^{41), 42)}
 - 이자소득부터 합산
 -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합산
 -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합산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 배당가산액 = $\text{배당소득} \times 11/100$ ⁴³⁾
 - 한도액⁴⁴⁾ =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 \text{비교산출세액}$
 -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 (\text{종합소득과세표준} - 2\text{천만원})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40)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2

42) 국세청(2020), p. 134

43) 현재의 배당가산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분에 적용하며, 2009. 1. 1.~2010. 12. 31. 기간에는 12/100을 적용하였음

44)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액은 2천만원 초과분 금융소득 총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2천만원 초과분 금융소득금액(귀속법인세 포함)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증가하는 세액 상당액을 의미함(임상엽·정정운(2021), p. 354)

$$\text{- 비교산출세액} = (\text{종합소득과세표준} - \text{금융소득금액}^{45}) \times \text{기본세율} + \text{금융소득 총수입금액} \times 14\%$$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배당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배당소득(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은 허용되지 않음

다.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정 연혁

- 현재의 그로스업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는 1990년 도입되었음⁴⁶⁾
 - 1990년 이전까지는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고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음
 - 이는 단순히 세 부담만 경감하는 제도이고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제도였음
 - 1990년 개정 시 귀속법인세의 1/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17/99⁴⁷⁾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 이후 배당가산율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⁴⁸⁾
 - 1993년 법 개정 시 당시의 낮은 법인세율인 18%를 기준으로 배당가산율(22%)을 산출하였음

45)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금액 대신 배당소득금액이 되고, 배당소득금액이란 배당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임

46) 김진수(2004), pp. 64~66을 기초로 정리함

47) 공공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

48) 삼일아이닷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해설', https://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2-20&jo=17&treejo=0#content_body, 검색일자: 2022. 5. 18.

- 1995년 12월 29일 법 개정 시 낮은 법인세율이 18%에서 16%로 인하됨에 따라 배당가산율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고 199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 부담률을 16%로 상정하여 산출한 배당가산율 19%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 이로 인해 16% 세율을 적용받은 주주의 경우 이중과세가 100% 조정되며, 28%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주의 경우 조정 폭이 종래의 46.7%에서 48.9%로 확대됨
-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법인단계에서의 실제 부담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배당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개정 이유는 1988년부터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세액을 주주단계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2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투자자의 세부담률이 종합과세되는 대주주보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 그러나 법인단계에서 부과한 세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에 분리과세되는 세액투자자의 세부담률이 종합과세되는 대주주보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며, 배당가산율 계산을 위해 배당지급처별로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는 다시 배당가산율을 19%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음
-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배당가산율을 종전 19%에서 15%로 인하하였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함
 - 2005년부터 법인세율이 종전 15%, 27%에서 13%, 25%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 「세법」 개정에서는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그로스업 비율을 15%로 개정하였음
-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 시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 배당가산율을 종전 15%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2%, 2011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분은 11%로 개정하였음

〈표 II-2〉 배당세액공제율 개정 연혁

연도	배당세액공제율
1990	배당소득 공제율: 17/99
1993	배당소득 공제율: 22/100
1997	저세율인 16%를 기준으로 그로스업 비율 산정: 19%
1998	법인세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경우, 그로스업 비율은 다음 중 선택 - 종전과 같은 19% -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 ¹⁾ $\frac{\text{법인세부담률}}{(1-\text{법인세부담률})}$
2000	저세율인 16%를 기준으로 그로스업 비율 산정: 19%
2006~2008	저세율인 13%를 기준으로 그로스업 비율 산정: 15%
2009~2010	저세율인 11%를 기준으로 그로스업 비율 산정: 12%
2011~ 현재	저세율인 10%를 기준으로 그로스업 비율 산정: 11%

주: 연도는 조정 방법의 개정 연도임

1) 공제율 최고 한도는 38%, 법인세부담률=법인세 납부 세액/법인의 소득 금액

자료: 김진수(2004), p66의 〈표 V-1〉; 삼일아이닷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해설, https://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2-20&jo=17&treejo=0#content_body, 검색일자: 2022. 5. 18.

□ 현재의 그로스업 비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낮은 세율은 10%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세율 구간은 2단계(10%, 22%) 세율 구조에서 2012년 3단계(10%/ 20%/ 22%), 2018년 4단계(10%, 20%, 22%, 25%)로 변경되었음

〈표 II-3〉 법인세율 개정 연혁

연도	법인세율
1989~1990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33%
1991~1993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1995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
1996~2001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2002~2004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2005~2007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2009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2010~2011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012~2017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18~현재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자료: 삼일아이닷컴, “조세 Data / 연도별 세목별 세율 요약표”, <https://www.samili.com/tax/JaryosilLibrary.asp> 검색일자: 2022. 8. 18.

3.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제도

가. 배당소득 과세 방법

-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 의제배당의 경우 세무상 의제배당 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 세무 조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됨
 -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면 10%, 200억원 초과분은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표 II-4〉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 이후 ¹⁾
2억원 이하	10%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22%
3천억원 초과	25%	

주: 1) 2022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율로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국회통과 전임 자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우리나라는 내국법인 간 법인주주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한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 출자법인이 지주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 요건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있음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표 II-5〉 참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 회사에 더 높은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됨
 - 지주회사는 일반법인보다 지배구조가 투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법인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임⁴⁹⁾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차감 조정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임
-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 시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익금 불산입 대상 금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감 금액을 계산함⁵⁰⁾
 - 자회사별로 계산한 익금불산입 금액이 영(0)보다 작은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봄

〈표 II-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text{익금불산입 금액} = \text{수입배당금}^{1)} \times \text{익금불산입률}^{2)} - \text{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3)}$
--

주: 1)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하 '3)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참고)

2) 출자법인을 지주회사인지 일반법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30~100%를 적용함(이하 '2) 익금불산입률' 참고)

3) 차입금 이자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 주식 출자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함(이하 '4)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참고)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별지 서식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⁵¹⁾

49) 이종교·황남석(2021) p. 5

50) 서이 46012-10666, 2002. 3. 29.를 준용할 수 있음; 이종교·황남석(2021), p. 25.; 이창기(2012), p. 250.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동 법령 제17조의3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16호의 2

- 이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위한 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 요건,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및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봄
 - 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요건, 익금불산입률의 경우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1) 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요건

가) 지주회사

- 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이 특정 법률에 따른 업종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회사를 말하며,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함⁵²⁾, 53), 54)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및 자회사의 업종 등을 감안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어야 함⁵⁵⁾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생주식 총 수 또는 출자 총액의 40%(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⁵⁶⁾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자회사의 배당기준일까지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5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53) 배당금의 지급 기준일이나 수령일에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일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주회사가 되면 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37092 판결)

54)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로 봄

55)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⁵⁷⁾인 경우, 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⁵⁸⁾이어야 함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함
 -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봄

나) 일반법인

- 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 모두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은 일반 법인의 규정을 적용함
 - 출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니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법인의 규정을 적용함⁵⁹⁾

2) 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률은 내국법인(출자법인 또는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여부 및 다른 내국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함
 - 지분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 하는 비율로,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함⁶⁰⁾

57) 금융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①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②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③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함(「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58)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관리,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함(「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9)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 2-17의 2...2

- 「상법」에 따른 중간배당의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봄⁶¹⁾
-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선입선출법)⁶²⁾
- 발행주식 총 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하며,⁶³⁾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음⁶⁴⁾

가) 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자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 여부 및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80%, 90%, 100%를 차등 적용함⁶⁵⁾
-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지주회사의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음
 -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80%
 - 지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90%
 - 지분율이 40% 이상인 경우: 100%
-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음
 - 지분율이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80%
 - 지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90%
 -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 100%

60)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61) 「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 2-17의 2-4

6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8항

63) 「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 2-17의 2-2

6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 12. 18.;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갑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65)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표 II-6〉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상장 여부	지분 비율 ¹⁾	익금불산입률
상장	40% 이상	100%
	30% 이상 40% 미만	90%
	20% 이상 30% 미만	80%
비상장	80% 이상	100%
	50% 이상 80% 미만	90%
	40% ²⁾ 이상 50% 미만	80%

주: 1)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함

2) 벤처기업의 경우 20% 이상

자료: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나) 일반법인

- 지주회사가 아닌 출자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피출자법인의 상장 여부 및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30%, 50%, 100%를 차등 적용함⁶⁶⁾
 - 피출자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음
 -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30%
 - 지분율이 3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50%
 - 지분율이 100%인 경우: 100%
 - 피출자법인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음
 -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30%
 - 지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50%
 - 지분율이 100%인 경우: 100%

66)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표 II-7〉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의 상장 여부	지분 비율 ¹⁾	익금불산입률
상장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비상장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주: 1)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3)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는 금전배당, 주식배당, 의제배당, 중간배당이 모두 포함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⁶⁷⁾
 - 배당기준일 이전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⁶⁸⁾
 - 유동화전문회사 등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⁶⁹⁾를 적용받는 법인 및 프로젝트

67)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9항

68) 배당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고, 배당기준일 직후에 배당락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69)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함(「법인세법」 제51조의2)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21. 12. 21. 개정, 2022.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⁷⁰⁾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유형의 법인세 감면 등⁷¹⁾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⁷²⁾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액⁷³⁾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⁷⁴⁾

4)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출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함⁷⁵⁾
-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할 경우 지급 이자의 손금 인정뿐만 아니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중복적인 조세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함⁷⁶⁾

7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법인세법」 제51조의2 각 호에 열거한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 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를 말함

7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73) 「법인세법」 제75조의14(2020. 12. 22. 신설); 2021. 1. 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

74)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75)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76)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4항

-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⁷⁷⁾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⁷⁸⁾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출자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 한함)⁷⁹⁾

□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당액은 차입금 이자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 주식이 출자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함

○ 피출자법인 주식이 출자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를 출자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 적수로 나눈 것을 말함

-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함⁸⁰⁾
- 자산 총액 적수 계산 시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총액에서 해당 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함

○ 이는 차입금 중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총자산의 가액 중 해당 피출자법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⁸¹⁾

77) 다음 각 호의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자산(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 이자

78) 「법인세법」 제72조 제6항

79) 2007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자회사에게 지원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차입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적수 및 당해 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 자산 총액 적수 및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함(2007년 2월 28일 이후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함)

80)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 2-17의 2...1 ①

〈표 II-8〉 익금불산입 차감 조정 대상 차입금 지급이자

$$\text{차감 금액} = A \times \frac{B}{C} \times D$$

- A: 출자법인(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¹⁾
 B: 해당 피출자법인(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²⁾ 적수
 C: 출자법인(지주회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²⁾의 적수
 D: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주: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금융지주회사가 차입 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2)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
 3)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총액에서 해당 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함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5항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 연혁⁸²⁾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1999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 법인에 대하여는 2000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83년부터 1999년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기관투자자⁸³⁾가 상장법인 등⁸⁴⁾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⁸⁵⁾
 - 다만 기관투자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분 비율이 10%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⁸⁶⁾

81) 이종교·황남석(2021), p. 26; 한만수(2002), p. 460

82) 김진수(2004), pp. 67~70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일이닷컴, '연도별 개정 「세법」을 참고하여 정리함

83) 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보험회사·은행 등

84) '상장법인 및 등록협회법인'을 말하며, 2005년 「세법」 개정 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개정, 2008년에는 '주권상장법인'으로 개정함. 이하 '상장법인 등'으로 표기함

8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8조 제6호

86)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년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17조 제2항

- 1999년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제도가 신설되었으며,⁸⁷⁾ 지주회사의 상장 여부 및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함⁸⁸⁾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초과: 90%
 - 지분 비율 50% 이상 80% 이하 (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60%
 - 2000년에는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신설되었으며,⁸⁹⁾ 지주회사 규정과 동일하게 출자법인의 상장 여부 및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초과: 5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하: 30%
- 2000년 이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0년 「세법」 개정 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며,⁹⁰⁾ 상장회사 등의 익금불산입률 90% 적용 기준이 되는 지분 비율 기준을 30%에서 40%로 조정함⁹¹⁾

87)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 제18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년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지주회사의 설립은 1999년 4월부터 허용되었으며, 주된 수입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88)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일성을 감안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익금불산입률을 더 높게 인정한 것임

89)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18조의3.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간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

90)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봄

91) 따라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으며, 지분 비율이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미만인 경우에는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일반법인의 규정을 적용함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초과 100% 미만: 100%
- 지분 비율 50% 이상 80% 이하(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상 40% 이하): 80%

- 2003년 「세법」 개정 시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출자 비율은 일반지주회사 요건보다 완화된 20%를 적용함⁹²⁾⁹³⁾
- 2006년 「세법」 개정 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⁹⁴⁾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초과: 100%⁹⁵⁾
 - 지분 비율 50% 이상 80% 이하(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상 40% 이하): 80%⁹⁶⁾
- 2007년 「세법」 개정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50%에서 4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에서 20%)로 완화함
- 2018년 「세법」 개정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함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초과: 100%
 - 지분 비율 40%(상장법인 등 및 벤처기업의 경우 20%) 초과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이하: 90%
 - 지분 비율 40%(상장법인 등 및 벤처기업의 경우 20%) 이하: 80%
- 2019년 「세법」 개정 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⁹⁷⁾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이상: 100%
 - 지분 비율 40%(상장법인 등 및 벤처기업의 경우 20%) 이상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미만: 90%
 - 지분 비율 40%(상장법인 등 및 벤처기업의 경우 20%) 미만: 80%

92) 벤처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의 지분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함

9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94)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8141호)」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기업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함임

95)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8141호) 부칙」 제1조)

96)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70%를 적용함

97) 지주회사의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이 40퍼센트 또는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이 80퍼센트 또는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 제18조의3)

- 2000년 이후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세법」 개정 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지분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률 100%를 적용(이중과세 완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초과 100% 미만: 5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하: 30%
 - 2006년 「세법」 개정 시 기관투자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함(30% 익금불산입)
 - 2019년 「세법」 개정 시 일반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⁹⁸⁾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50% 이상 100% 미만(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상 100% 미만): 5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미만: 30%

〈표 II-9〉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개정 연혁

연도	지주회사	일반법인
1983	-	• 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¹⁾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 지주회사의 상장 여부 및 지분 비율²⁾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상장법인 등의 익금불산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30% 초과: 90% - 지분 비율 30%: 60% 	-

98) 내국법인의 주권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이 30%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이 50%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을 30%에서 50%로 조정함(「법인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 제18조의2)

〈표 II-9〉의 계속

연도	지주회사	일반법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장법인의 익금불산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80% 초과: 90% - 지분 비율 50% 이상 80% 이하: 60%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완전 조정하고, 상장회사 등의 익금불산입률 90% 적용 기준이 되는 지분 비율 기준을 30%에서 40%로 조정함 상장법인 등의 익금불산입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40% 초과 100% 미만: 90% - 지분 비율 30% 이상³⁾ 40% 이하: 60% 비상장법인의 익금불산입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80% 초과 100% 미만: 90% - 지분 비율 50% 이상³⁾ 80% 이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상장법인 등의 익금불산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30% 초과: 50% - 지분 비율 30% 이하: 30% 비상장법인의 익금불산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50% 초과: 50% - 지분 비율 50% 이하: 30%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지주회사의 최소 출자 비율 요건은 일반 지주회사 요건보다 완화된 20%를 적용함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도 출자 법인의 지분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률 100%를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초과 100% 미만: 5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30%) 이하: 30%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2007~200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초과: 100%⁵⁾ - 지분 비율 50% 이상 80% 이하(상장법인 등의 경우 30%⁴⁾ 이상 40% 이하): 80%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투자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함(30% 익금불산입)

〈표 II-9〉의 계속

연도	지주회사	일반법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소 지분 요건을 50%에서 4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에서 20%)로 완화함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초과: 100% - 지분 비율 50% 초과 80% 이하(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 90% - 지분 비율 40%(상장법인 등 및 벤처기업의 경우 20%) 이상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하: 80% 	-
2019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이상: 100% - 지분 비율 50% 이상 80% 미만(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상 40% 미만): 90% - 지분 비율 40%(상장법인 등 및 벤처기업의 경우 20%) 이상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미만: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상 100% 미만: 5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미만: 30%

주: 1) 기관투자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상장법인 등의 발행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분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지분 비율 및 배당소득금액은 자회사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함. 이하 동일
 3) 지분 비율이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미만인 경우에는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일반법인의 규정을 적용함
 4)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20%
 5)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6)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70%를 적용함

자료: 김진수(2004), pp. 68~70 및 삼일아이닷컴, ‘연도별 개정세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III.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1. 미국

가. 배당소득의 범위⁹⁹⁾

- 배당(Dividends)은 기업이나 뮤추얼펀드가 지급하는 금전,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의 분배를 의미함¹⁰⁰⁾
 - 일반적인 분배 유형은 ①보통배당금(Ordinary Dividends), ②자본이득 분배(Capital Gain Distributions), ③비배당 분배(Nondividend Distributions)가 있음

- 보통배당금이란 법인이나 뮤추얼펀드로부터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임
 - 보통배당금은 배당가능이익(earnings and profits, E&P)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주주에게는 정상소득(ordinary income)에 해당함
 - 지불하는 법인 또는 뮤추얼펀드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보통주 또는 우선주에 대해 받는 모든 배당금은 보통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음

99) 미국 국세청,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2021, pp. 18~21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법인의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형태로는 배당, 자기주식 취득과 감자, 해산·청산 이 있을 수 있는데, 본 고에서는 배당에 대해서만 다루고,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감자 해산·청산 및 합병·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유출은 다루지 않음

100) “세법상 배당(dividend)이란 용어는 ‘배당가능이익(earnings and profits)’의 범위 안에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함”, “earnings and profits이라는 용어는 기능이나 역할이 우리 법의 배당가능이익 내지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 정도에 해당함” (이창희, 『미국법인세법』, 2018, p. 83)

- 적격배당금(Qualified Dividends)은 보통배당금 중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으로, 적격 배당에 대해서는 경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순자본이익(net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0%, 15%, 20%)이 적용됨

- 적격배당금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금임
 - 미국 법인 또는 적격 외국법인(qualified foreign corporation)¹⁰¹⁾이 지급한 것 이어야 함
 - 적격배당금에서 제외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통주는 배당락일(ex-dividend date) 전후의 ±60일(121일) 동안 60일 초과 하여 보유하여야 함
 - 우선주는 배당락일 전후의 ±90일(181일) 동안 90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 주식을 보유한 날수를 계산할 때 주식을 처분한 날은 포함하되 취득한 날은 포함 하지 않음

- 적격 배당에서 제외되는 배당은 다음과 같음
 - 자본이익 분배
 - 상호저축은행, 협동은행, 신용조합 및 각종 협회와 이와 유사한 금융 기관의 예금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배당금이 지급된 법인의 과세 연도 또는 그 법인의 직전 과세 연도 동안 면세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farmer's cooperative)으로부터의 배당금
 - 해당 기업이 유지하는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 의해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101) 적격 외국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임

- ① 법인은 미국령에 설립되어야 함
- ② 법인은 미국과의 포괄적 소득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
- ③ 법인은 위의 ① 또는 ②를 충족하지 않지만 배당이 지급되는 주식은 미국의 기존 증권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음

- 배당금 대신 지급하되, 지급금이 적격배당금이 아님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적격배당금이 아님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지불금
- 자본이득 분배('자본이득 배당(capital gain dividend)'이라고도 함)는 뮤추얼펀드 및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에 의해 지급되거나 적립된 것임
- 자본이득 분배는 뮤추얼펀드 및 부동산투자신탁의 보유기간 관계없이 장기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비배당 분배(Nondividend Distributions)는 법인 또는 뮤추얼펀드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P)에서 지급되지 않은 분배를 의미함
- 비배당 분배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이는 주식의 장부가(basis)를 감소시킴
 - 주식의 장부가가 완전히 회복(recover)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비과세되는 부분은 자본의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처리됨
 - 즉, 회사 주식에 투자한 것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함
 - 주식을 서로 다른 계정에, 또는 다른 시기에 매수하여 비배당 분배 대상 주식을 확실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의 장부가를 먼저 감소시킴
 - 주식의 장부가가 0으로 줄어들면, 추가적인 비배당 분배는 자본이득으로 보고함
 -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자본이득으로 보고함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 과세 방법

-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며¹⁰²⁾ 배당금에 대한 과세 처리는 해당 배당금이 적격 배당금(qualified dividend)인지 보통배당금(ordinary dividend)¹⁰³⁾인지에 따라 과세 상 차이가 있음¹⁰⁴⁾
- 적격배당금은 투자자의 세무신고 유형 및 과세소득에 따라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됨
- 보통배당금은 경상소득(ordinary income)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신고 유형 및 과세소득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세율인 10~37%의 세율이 적용됨
 - 보통배당금에 대해서는 급여와 같은 정규 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함
- 보통배당금의 경우 최고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적격배당금은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적격배당금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 401K, IRA, Roth IRA와 같이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의 배당소득은 퇴직 시 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음
- 배당금은 회사의 수익 일부를 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적격배당금과 일반 배당금 간에는 세금 처리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음

102) 퇴직계좌와 같이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는 제외함

103) 보통배당금은 '비적격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s)'이라고도 함

104) Investopedia, "How Are Qualified and Ordinary Dividends Taxed?",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taxes/090116/how-are-qualified-and-nonqualified-dividends-taxed.asp>, 검색일자: 2022. 7. 11.

〈표 III-1〉 미국의 장기자본이득 세율(2022년)

(단위: 달러, %)

과세표준			세율
독신	세대주	부부합산	
0~41,675	0~55,800	0~83,350	0
41,676~459,750	55,801~488,500	83,351~517,200	15
459,751~	488,501~	517,201~	20

자료: Tax Foundation, 2022 Tax Brackets, <https://taxfoundation.org/publications/federal-tax-rates-and-tax-brackets/#brackets> 검색일자 2022. 8. 29.

〈표 III-2〉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2022년)

(단위: 달러, %)

과세표준			연방소득세율 (%)
독신	세대주	부부합산	
~10,275	~14,650	~20,550	10
10,275~41,775	14,650~55,900	20,550~83,550	12
41,775~89,075	55,900~89,050	83,550~178,150	22
89,075~170,050	89,050~170,050	178,150~340,100	24
170,050~215,950	170,050~215,950	340,100~431,900	32
215,950~539,900	215,950~539,900	431,900~647,850	35
539,900~	539,900~	647,850~	37

주: 연방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37%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이며, 세무신고 유형(단독, 세대주, 부부합산)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을 달리함

자료: Tax Foundation, 2022 Tax Brackets, <https://taxfoundation.org/publications/federal-tax-rates-and-tax-brackets/#brackets> 검색일자 2022. 8. 29.

□ 배당소득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또는 1040SR)를 통해 신고함¹⁰⁵⁾

- 10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수취한 투자자는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로부터 1099-DIV 양식을 받음

105) 미국 국세청,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2021, pp. 22~23

- 해당 양식에는 보통배당금, 적격배당금, 투자비용 및 총자본이득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 기업은 매년 1월 31일까지 1099-DIV 양식을 보내야 함

-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포함하여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를 추가로 납부함¹⁰⁶⁾
 - 순투자소득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었고¹⁰⁷⁾ 소득이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개인, 유산(estate) 및 신탁(trust)의 순투자소득에 부과함
 - 과세 대상은 수정된 조정총소득(modified AGI)¹⁰⁸⁾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임¹⁰⁹⁾
 -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 25만달러, 부부별도신고 12만 5천달러, 독신 2십만달러, 세대주 2십만달러, 부양자녀 있는 미망인 25만달러임
 - 순투자소득세 대상이 되는 투자소득에는 배당, 이자, 자본이득, 임대 및 로열티 소득, 비적격연금, 금융상품 및 수동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됨¹¹⁰⁾
 - 순투자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투자비용은 이자비용, 투자자문 및 중개수수료, 임대 및 로열티 소득 관련 비용, 납세비용, 주 및 지방소득세 등임

106) 미국 국세청,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https://www.irs.gov/newsroom/questions-and-answers-on-the-net-investment-income-tax>, 검색일자: 2022. 7. 26.

107) 2013년에 제출된 2012 과세 연도 소득세 신고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음

108) 수정된 조정총소득이란 조정총소득에서 §911(a)(1)에 의해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911(d)(6)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공제금액을 조정한 금액임

109)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순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110) 순투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일반소득에는 임금, 실업수당, 비수동적 사업소득, 사회보장 혜택, 위자료, 비과세 이자, 자영업 소득, 특정 적격 플랜의 분배금이 있음
 자본손실로 상쇄되지 않은 자본이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익(gain)은 순투자소득에 해당됨
 - 주식, 채권 및 뮤추얼펀드 매각이익
 - 뮤추얼펀드의 자본이득 분배
 - 투자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주거지가 아닌 두 번째 주택 매각이익 포함)
 - 파트너십 및 S-법인의 지분 매각이익(수동적 소유자인 경우)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미국은 현재 개인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¹¹⁾
 -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는 보통배당금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고 있음
 - 적격배당금의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 과세 방법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배당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후 법인세로 과세함
 - 2022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1%의 단일세율임
 - 미국 연방 법인세제는 2017년까지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5~39%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2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임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¹¹²⁾

- 법인은 과세 연도 동안 받은 특정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지분율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111) 과거 1986년 세계개혁 이전에는 개인주주 단계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을 100달러까지 소득공제하였음 (김진수, 『개인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2004, p. 80). 미국은 개인주주에 대해서 2003년까지 전통적 이중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부담의 일부를 덜어주고 있음(이창희(2018), p. 95)

112) 미국 국세청, "Corporations", Pub 542, pp. 10~11을 기초로 정리함

-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배당을 받는 법인(주주 법인)이 배당하는 법인의 지분을 20% 미만 소유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배당금의 50%를 공제할 수 있고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 특정 한도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의 65%를 공제할 수 있음¹¹³⁾
 - 지분율은 배당받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의결권 주식 및 가치를 기준으로 함
- 소규모투자법인(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은 과세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법률로 정하고 있는 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 배당금에는 특정 한도가 적용됨
 - 법률로 정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본이득배당(capital gain dividend)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관계집단(affiliated group) 구성원(지분율 80%)이 수령하는 적격배당금은 100% 공제를 적용함^{114), 115)}
 - 관계집단이란 하나 이상의 법인이 지분을 통해 공통의 모법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집단 구성원이 되려면 의결권 및 기업가치의 80% 이상을 관계집단(모법인 또는 관계집단 내 다른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¹¹⁶⁾
 - 적격배당금이란 배당금을 받는 회사와 분배하는 회사가 배당금을 받은 날 동일한 관계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배당금은 분배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E&P)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¹¹⁷⁾

113)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지분을 소유한 외국기업의 배당금(배당금으로 취급되는 항목 포함) 중 해외 원천 부분의 100%가 공제될 수 있으며 해당 배당금을 받는 주식은 365일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함(이 공제는 내국법인 배당금의 배당금 공제 한도 대상이 아님)

114) CCH, "Qualifying Dividends for Purposes of 100-Percent Dividends-Received Deduction", <https://answerconnect.cch.com/document/arp28ff2d9a347b6a1000b51f001b7840a5b203a/federal/irc/explanation/qualifying-dividends-for-purposes-of-100-percent-dividends-received-deduction>, 검색일자: 2022. 8. 31.

115) 일반적으로 관계집단(80% 지분 소유)은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는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여부와 무관함(이중교·황남석(233, p. 246)

116) 미국 「내국세입법」, §1504(a): AICPA, "Defining an Affiliated Group", 1999,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issues/1999/nov/defininganaffiliatedgroup.html>, 검색일자: 2022. 9. 23.

- 다음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다음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 부동산 투자신탁(REIT)
 - 배당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 또는 이전 과세 연도에 「내국세법」 §501 또는 §521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¹¹⁸⁾
 - 배당락일 전후 ±45일(총 91일) 동안 46일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¹¹⁹⁾
 - 배당락일 전후 ±90일(총 181일) 기간 중 91일 미만 보유한 특정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 공매도 또는 기타 이유로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자산의 포지션과 관련하여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 법인

- 국내건설대출조합,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등의 예금 또는 출금계좌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금이 아닌 이자이므로 배당금공제대상이 아님

- 수령하거나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총 공제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공제가 제한됨¹²⁰⁾
 - 2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소득과 100% 공제가 허용되는 배당금으로부터 받은 배당금¹²¹⁾과 차액의 65%
 - 지분을 20% 미만인 법인으로부터 받거나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소득과 100% 공제가 허용되는 배당금과 차액의 80%

- 일반적으로 부채에 관련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되지만¹²²⁾, 부채로 조달된 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됨¹²³⁾

117) 분배는 당해 연도 배당가능이익(E&P)에서 먼저 지급되고 초과분은 이전 연도의 배당가능이익(E&P)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함

118) 미국 「내국세입법」 §501 - Exemption from tax on corporations, certain trusts, etc.

미국 「내국세입법」 §521 - Exemption of farmers' cooperatives from tax

119) 미국 「내국세입법」 §246(c) - Exclusion of Certain Dividends

120)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소득 산정 시 운영업손실 공제, 특정농원에협동조합의 국내생산활동으로 인한 소득공제, 수입배당공제, 특별배당금의 비과세 부분으로 인한 조정, 자본자산 거래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Capital Loss Carry-back)는 포함하지 않음

121) 관계집단 구성원 또는 소규모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22) 미국 「내국세입법」 §163(a)

123) 미국 「내국세입법」 §246A(c)(1)

- 포트폴리오 주식이란 배당락일 현재 의결권(또는 주식의 총 가치)의 50% 미만을 소유하는 주식을 의미함

2. 호주

가. 배당소득의 범위

- 과세 목적상 배당이란 기업이 주주에게 금전 또는 주식을 포함한 기타 재산으로 지급하는 이익 분배임¹²⁴⁾
 -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상장투자회사(listed investment company), 공모신탁(public trading trust), 법인단위신탁(corporate unit trust), 유한책임회사(corporate limited partnership)로부터 수취함¹²⁵⁾
 - 배당으로 현금 대신 과세 대상 보너스 주식(bonus shares)을 지급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가치를 나타내는 배당금명세서(dividend statement) 또는 분배명세서(distribution statement)를 제공해야 함¹²⁶⁾
- 호주 거주자가 수취하는 배당에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지급하는 세후 배당(frunked dividend, 이하 '세후배당'이라 함)과 호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전이익의 배당(unfrunked dividend, 이하 '세전이익의 배당'이라 함)이 있음¹²⁷⁾
 - 세전이익의 배당이란 해외소득 및 기타 사유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배당임
 - 세전이익의 배당에는 이자로 취급되는 배당금, 해외에서 발행된 특정 자본상품과 관련하여 비주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업분할에 따른 배당¹²⁸⁾, 배당으로 간주

124) 호주 국세청, "Investment income",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come-you-must-declare/investment-income/>, 검색일자: 2022. 7. 29.

125) 유한파트너십은 분배(distribution)의 형태로 지급함

126) 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 4

127) 안중석(2012), pp. 114~115

128) 분할에 의해 지급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주요 기업(head entity)이

되는 주주 및 이사 에 대한 과도한 지불 등이 포함됨¹²⁹⁾

- 세전이익의 배당으로 규정된 배당 외의 배당은 세후배당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모두 세후배당(frunked dividend)임
 - 비지분주식(non-equity share)에 대한 배당금도 임퓨테이션 방식이 적용되며 비지분주식 배당도 세전배당 또는 세후배당이 가능함¹³⁰⁾
 - 임퓨테이션 제도에서 비지분주식 분류되는 특정 주식(예: 상환우선주¹³¹⁾)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세전이익의 배당으로 처리됨
- 세후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은 호주 거주기업과 호주 임퓨테이션 제도의 적용을 선택한 뉴질랜드 회사임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 과세 방법

- 호주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됨
 - 개인주주가 세후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배당액에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한 배당세액(frunking credit, 이하 ‘배당세액’이라 함)을 더한 금액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임
 - 배당에 첨부된 배당세액을 수취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함으로써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배당금에 대해서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적격분할에 해당되고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주요 기업이 주주에게 과세되는 배당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에 세전이익의 배당(unfrunked dividend)으로 보고하여야 함(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 4)

129) 호주 국세청, “Frunking distribution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pay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frunking-distributions/#Unfrunkabledistributions>, 검색일자: 2022. 9.11.

130) 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 5

131) 상환우선주(redeemable preference shares)는 특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서 소각을 하도록 한 주식임

-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개인 단계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법인세율은 30% 또는 25%의 단일세율이고 소득세율은 0 ~ 45%의 5단계 누진세율임

〈표 Ⅲ-3〉 호주 소득세율(2021~2022년 과세 연도)

(단위: 호주달러, %)

과세표준	세율
18,200 이하	0
18,201~45,000	19
45,001~120,000	32.5
120,001~180,000	37
180,001 이상	45

자료: 호주 국세청, "Individual income tax rates,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2. 8. 2.

-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할당된 배당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¹³²⁾
 - 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선단체도 배당금에 첨부된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자격이 있음
 - 배당세액공제액 초과분의 환급이 가능한 주주는 다음과 같음
 - 직접 또는 신탁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세후배당을 받은 개인
 - 승인된 소득세 면제 자선단체
 - 연금기금(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승인된 예금기금(Approved Deposit Funds, ADFs) 및 연금신탁(Pooled Superannuation Trusts, PSTs)
 - 생명보험회사 및 연금사업 관련 등록기관

132) 호주 국세청, "Refunding excess franking credit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receiv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refunding-excess-franking-credits/>, 검색일자: 2022. 8. 10.

-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지출은 배당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¹³³⁾
 - 투자자문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주식 매수를 위한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투자 상담 등을 위해 지출한 여행 경비, 투자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투자전문 출판 및 구독서비스 비용,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인터넷 및 컴퓨터 비용, 주식 매수를 위한 대출에 필요한 직접비용
 - 상장투자회사(Listed Investment Company, LIC)가 자본이득 금액이 포함된 배당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공제(income 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세 공제는 개인으로 배당금 지급 당시 호주 거주자이며, 배당금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었고 배당금에는 12개월 동안 상장투자회사가 소유한 자본이득 자산(CGT asset)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공제액은 상장투자회사 자본이득의 50%이고, 자본이득 금액은 배당금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포트폴리오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도 공제 가능함
 - 주식매매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취득비용(예: 증개비용, 인지세)은 공제할 수 없음
 - 주식취득비용은 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 목적 상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음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가) 임퓨테이션 제도의 개요

- 법인은 회사의 주주, 공모신탁의 소유자, 유한파트너십의 파트너와 같은 구성원에게 배당을 지급함¹³⁴⁾
 - 구성원은 개인 또는 기타 실체(entity)가 될 수 있음

133) 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 9

134) 호주 국세청, "Receiving dividends and other distribution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Receiv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 검색일자: 2022. 9. 2.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franking entity)은 배당을 받은 각 구성원에게 할당된 배당세액 금액이 명시된 배당금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호주 거주자만이 분배금에 첨부된 배당세액을 자신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¹³⁵⁾
- 호주는 법인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한 후 분배 후 수취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임퓨테이션 제도(imputation system)를 적용하고 있음¹³⁶⁾
- 임퓨테이션 제도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배당세액’으로 분배금에 첨부하여 주주에게 전가되고 배당 수취인은 이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 주주에게 이전된 배당세액은 자신의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
 - 수취인은 분배금과 첨부된 배당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임퓨테이션 제도는 비주주지분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비주식 배당금(non-share dividend)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배당세액이 첨부된 배당¹³⁷⁾을 하려면 분배 주체가 적절한 실체 이어야 함¹³⁸⁾
- 적절한 실체는 호주 거주자 및 뉴질랜드 회사로서 호주의 임퓨테이션 제도를 선택한 회사 및 법인임
 - 가장 일반적인 세액공제가 첨부된 세후배당은 회사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이며, 이익의 분배만 세액공제가 첨부된 배당을 할 수 있음
 -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은 ①배당금 또는 회사가 배당금으로 취급하는 것, ②

135) 비거주자는 프랭크된 한도 내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할 수 있음

136) 호주 국세청, “Imputation”,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 검색일자: 2022. 8. 3.

137) 배당세액(franking credit)이 첨부된 배당을 하는 것을 ‘franked distribution’이라 함

138) 호주 국세청, “Franking distribution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Pay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Frinking-distributions/>, 검색일자: 2022. 9. 2.

유한책임회사의 분배금¹³⁹⁾ 및 배당금으로 간주되는 것 ③공모신탁¹⁴⁰⁾이 발행하는 단위신탁 배당금임

- 법인이 배당세액이 첨부된 배당을 할 때, 주주에게 할당되는 세액공제 최고액은 임퓨테이션 목적의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함¹⁴¹⁾
 - 전년도 총매출액이 AUD 5,000 미만이고 과세대상소득(assessable income)의 80% 이하가 수동소득인 법인의 법인세율은 기본세율인 25%임(2021/22 과세 연도)¹⁴²⁾
 - 기본세율 적용대상 법인 외의 경우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함

- 배당세액공제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¹⁴³⁾
 - 세액공제 한도액 = 분배할 배당액 × (1 ÷ 적용가능한 가산율)
 - 적용가능한 가산율(gross-up rate) = (1 - 법인세율) ÷ 법인세율

- 법인은 분배금에 첨부되어 주주에게 전달되는 납부세액인 배당세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프랭크 계정(frinking account)를 사용함¹⁴⁴⁾
 - 임퓨테이션 제도의 기본원칙은 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주주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¹⁴⁵⁾ 과세 연도 말에 프랭크 계정이 적자(deficit)인 경우, FDT(Frinking deficit tax)를 납부해야 함

139) 합자회사가 아닌 파트너십의 이익분배는 제외함

140) 공모신탁(public trading trust)이란 ‘공공단위신탁(public unit trust)’이면서 공개모집이거나 최소한의 투자자가 있어야 함

141) 호주 국세청, “Allocating franking credit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Pay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Allocating-franking-credits/>, 검색일자: 2022. 9. 2.

142) 신설법인도 기본세율 대상임

143) 호주 국세청, “Calculating the maximum franking credit”,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Pay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Allocating-franking-credits/>, 검색일자: 2022. 9. 2.

144) 호주 국세청, “Franking account”,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pay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franking-account/>, 검색일자: 2022. 9. 2.

145) 호주 국세청, “Franking deficit tax”,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pay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franking-account/franking-deficit-tax/>, 검색일자: 2022. 9. 2.

- FDT 납부액은 미래의 소득세 납부액에서 상계할 수 있음

3) 조정방법

- 호주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업 이익에 대하여 주주에게만 과세되는 완전임퓨테이션 제도(full imputation system)를 운영함¹⁴⁶⁾
 - 주주가 회사로부터 세후배당(franded dividend)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가 배당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주주가 선납한 것으로 처리됨
 - 따라서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호주 거주법인으로부터 호주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세액(franning credit)으로 전달하는 것임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그 배당에 대한 세금 납부액을 프랭크 계정에 기입하고¹⁴⁷⁾ 배당 시 주주에게 전달하면, 세후배당(franded dividend)을 받은 개인은 배당세액(franning credit) 만큼을 합산(gross up)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배당세액을 차감함¹⁴⁸⁾
 -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은 환급함
- 호주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금명세서를 보내야 함¹⁴⁹⁾
 - 배당금명세서에는 배당하는 회사의 이름, 배당이 이루어진 날짜, 배당 금액, 배당에 할당된 배당세액공제 금액, 배당 중 세후배당과 세전이익의 배당 부분의 금액, 주주의 납세신고번호(Tax File Number, TFN) 등이 포함됨
- 배당금 또는 비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 세금신고서의 과세소득에는 세전이익의 배당, 세후배당, 배당세액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함¹⁵⁰⁾

146) IBFD,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3 June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au_s_001.html%23ita_au_s_1.8.3.6., 검색일자: 2022. 8. 2.

147) 호주 「소득세법97」 s 202.5

148) 호주 「소득세법97」 s 207.5

149) 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 5

150) 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 6

- 만일 거주자인 주주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자신의 납세신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배당에 소득세 최고세율(45%)에 Medicare levy(2%)를 합한 47%를 적용한 세금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개인의 한계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0~4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그로스업한 분배금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 금액이 분배금에 첨부된 세액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¹⁵¹⁾
- 배당세액공제(franking tax offset)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소득과 순자본 이득에서 발생하는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¹⁵²⁾
-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은 주주의 경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은 환급이 가능함
- 배당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보유기간 규정(holding period rule), 관련지급 규정(related payments rule), 중복공제금지 규정(dividend washing integrity rule)에 의해 제한이 있을 수 있음¹⁵³⁾
- 보유기간 규정에 따르면, 최소 45일(특정 우선주의 경우 90일) 동안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해 배당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이는 취득일 또는 처분일을 제외하고 최소 45일(특정 우선주의 경우 90일) 동안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계속 소유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임
 - 일반적인 재무위험(financial risk)이 30% 이하인 경우 보유일수에서 제외하며, 재무위험은 헷지, 옵션, 선물과 같은 약정을 통해 감소됨
 - 소액주주 면제에 따라 총 프랭킹크레딧 5,000 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51) 호주 국세청, "Receiving dividends and other distribution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Receiv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 검색일자: 2022. 9. 2.

152) 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 7

153) 호주 국세청, "You and your shares 2022", pp. 7~8

- 관련지급 규정에 따르면, 세후배당의 혜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중복공제금지 규정이란 배당세탁(dividend washing)의 결과로 받은 배당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배당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임
 - 배당세탁이란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주식을 매각한 후 특별 거래 시장을 이용하여 동일한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중복공제금지 규정에 의해 두 번째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소액주주면제(small shareholder exemption)에 의해 5,000호주달러 이하의 배당금을 받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음¹⁵⁴⁾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¹⁵⁵⁾

1) 배당소득 과세 방법

- 호주 거주법인은 전 세계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며, 회사가 수령하는 배당금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 산입됨¹⁵⁶⁾
-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거주회사로부터 거주회사에 지불된 세전이익의 배당(unfranked dividend)은 2003년 6월 30일까지 100% 소유의 그룹 내에서 지불되는 것과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세무상 연결그룹 회사 간에 지불되는 것을 제외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됨

154) 이 면제는 dividend washing의 결과로 받은 배당금이 개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배당금이 신탁 또는 파트너십 지분을 통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55) 호주 국세청, "Imputation",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 검색일자: 2022. 8. 3.

156) 안중석(2012), pp. 110~115.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됨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법인주주도 개인주주와 동일하게 직접 세후배당을 받는 경우, 분배금과 배당세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에 포함한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을 공제함¹⁵⁷⁾
 - 이러한 방식은 개인, 법인(corporate tax entity), 적격연금기금, 승인된 예금기금 및 공동연금신탁을 포함하여 세후배당(franded distribution)을 받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법인세율은 기본세율 적용대상 외의 모든 법인에 대해 30%를 적용함¹⁵⁸⁾
 - 기본세율 적용대상 기업은 총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체 소득에서 수동 소득이 80% 이하인 기업임
 - 매출액 기준금액은 2017/18 과세 연도는 2,500만 호주달러이고, 2018/19 과세 연도부터 현재까지 5,000만 호주달러임
 - 기본세율은 2021/22 과세 연도 부터는 25%임
 - 기본세율은 2017/18 ~ 2019/20 과세 연도 기간에는 27.5%, 2020/21 과세 연도는 26%를 적용하였음

〈표 III-4〉 호주 법인세율

(호주달러, %)

과세 연도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 미만 법인	매출액 기준 이상 법인
2017/18	2,500만	27.5	30
2018/19~2019/20	5,000만	27.5	30
2020/21	5,000만	26	30
2021/22 이후	5,000만	25	30

자료: 호주 국세청,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https://www.ato.gov.au/rates/changes-to-company-tax-rates/#>, 검색일자: 2022. 8. 1.

157) 호주 국세청, “Receiving dividends and other distribution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Receiv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 검색일자: 2022. 9. 2.

158) 호주 국세청,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https://www.ato.gov.au/rates/changes-to-company-tax-rates/#>, 검색일자: 2022. 8. 1.

- 파트너십과 신탁에 대한 세후분배는 일반적으로 파트너 또는 수익자(beneficiary)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됨
 -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세액 금액을 합산한 분배금임
 -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분배금의 경우, 최종 수취인만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의 개인주주와 달리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음
 -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은 당해 연도 결손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연도 결손금과 합산하여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함¹⁵⁹⁾
 - 당해 연도에 손실이 없는 경우, 전년도 손실금액에서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세액 초과액을 법인세율로 나누어 결손금으로 환산하며, 환산한 결손금과 당해 연도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결손금임

- 배당세액 초과액을 결손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연도 결손금을 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¹⁶⁰⁾
 - (1단계) 일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결손금 산출
 - (2단계) 배당세액 초과분을 결손금으로 전환
 - (3단계) 일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결손금과 전환된 결손금을 합산함
 - (4단계) 3단계에서 산출된 결손금에서 면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산출
 - 산출된 금액이 양수면, 그 금액이 당해 연도 결손금이 되고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산출된 금액이 0 또는 음수면, 당해 연도 결손금이 없는 것이므로 전년도 결손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159) 호주 국세청, “Utilising franking tax offsets and effect on losses – corporate tax entitie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In-detail/Utilising-franking-tax-offsets-and-effect-on-losses---corporate-tax-entities/>, 검색일자: 2022. 8. 9.

160) 호주 국세청, “Utilising franking tax offsets and effect on losses – corporate tax entities”, <https://www.ato.gov.au/Business/Imputation/In-detail/Utilising-franking-tax-offsets-and-effect-on-losses---corporate-tax-entities/>, 검색일자: 2022. 8. 9.

3. 영국

가. 배당소득의 범위¹⁶¹⁾

- 영국 「세법」상 배당(dividends)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¹⁶²⁾ 기업 지분에 참여한 대가로서 분배(distribution)되는 것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함¹⁶³⁾
 -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분배의 개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 주식상환초과금, 지분증권에 대한 이자 등 기업의 자본 분배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배당금에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현물 배당도 포함됨¹⁶⁴⁾
 - 현금 배당은 그 지급한 가액을 배당금으로 하며, 현물 배당은 일반적으로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배당금으로 봄
 - 다만 현물 배당 시 이전된 자산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상 분배로 처리함

161)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2 Ma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k_s_1.6.&refresh=1657689639907%23ita_uk_s_1.5.1., 검색일자: 2022. 7. 12.

162) 판례법상으로도 명확한 정의를 정하지 않고 있음; 판례법에서는 배당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간 통용되는 표현으로서(*Esso Petroleum Co Ltd v Ministry of Defence [1989] BTC 500*)" 또는 "일반적인 사업가의 인식(*Memec v IRC [1996] BTC 590*)"에 부합하는 개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봄(자료: 영국 국세청, "Distributions: general: dividends and tax law",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15200>, 검색일자: 2022. 8. 17.)

1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48

164) 영국 국세청, "Distributions: general: dividends and tax law",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15200>, 검색일자: 2022. 8. 16.

- 영국 「소득세법 2007」 제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dividend income)’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정하고 있음¹⁶⁵⁾
 - 영국 거주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기타 분배¹⁶⁶⁾
 - 분배는 「법인세법」상 정의에 따르며,¹⁶⁷⁾ 개방형투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company) 및 승인된 단위신탁(Authorised unit trust)의 분배금 등이 포함됨
 - 영국 거주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배당금¹⁶⁸⁾, ¹⁶⁹⁾
 - 비거주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¹⁷⁰⁾
 - 폐쇄회사(close company)¹⁷¹⁾ 참여자에 대한 대출채권이나 미수금 상각액(release or writes-off the loan or advance)¹⁷²⁾ 및 달리 과세되지 않은 해외 분배금(foreign distribution)
 - 배당금 또는 「법인세법」상 분배는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165) 영국 「소득세법 2007」 제19조; 「거래 및 기타 소득세법 2005」[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 ITTOIA 2005] Part4 Chapter3부터 Chapter6 및 Chapter8

166) 영국 「거래 및 기타 소득세법 2005」[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 ITTOIA 2005] 제383조

167) 영국 「소득세법 2007」 제989조

168) 영국 「거래 및 기타 소득세법 2005」 제410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배당 규정(「동법 Part4」 Chapter5: stock dividend rules)’의 적용 대상인 주식배당금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주주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식의 발행 당시 또는 발행 이후 변경된 조건에 의하여 무상주(bonus share)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169) 일반적인 무상증자(ordinary bonus issues: 준비금의 자본화(capitalisation of reserves) 또는 기존 주식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allotment)함에 따른 무상주 발행)은 주식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자료: 영국 국세청, “Dividends and other company distributions: stock dividends: in troduc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avings-and-investment-manual/saim5150>, 검색일자: 2022. 8. 17.; CIR v Blott (1921) 8TC 101; CIR v Wright (1926) 11TC 181)

170) 영국 「거래 및 기타소득세법 2005」 제402조

171) 5인 이하의 참여자 또는 이사(directors)의 통제를 받고, 그들이 청산 시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 회사를 말함(영국 「법인세법 2010」 제439조)

172) 영국 「거래 및 기타소득세법 2005」 제415조

- ‘분배(distribution)’는 배당(dividend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인세법(Corporate Tax Act: CTA) 2010」에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함^{173), 174)}
- 자본배당(capital dividends)¹⁷⁵⁾을 포함한 모든 배당금
 -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¹⁷⁶⁾ 발생하는 모든 회사 자산의 분배¹⁷⁷⁾
 - 회사가 주식 또는 증권의 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한 상환가능주식(redeemable share capital) 또는 증권(security)
 - 비상업증권(non-commercial securities)¹⁷⁸⁾ 및 특정증권(special securities)¹⁷⁹⁾

173)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00조, 제1001조

174)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Last Reviewed: 31 March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uk_s_6.1.%23cta_uk_s_6.1., 검색일자: 2022. 6. 28.

175) 자본이익(capital profits) 또는 자본 배당금 계정(Capital Dividend Account: CDA)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을 의미하며, 「자본이득세법(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TCGA) 1992」 제122조 제5항에 따른 자본 분배(capital distribution) 또는 자본성격의 배당금(dividends of a capital nature)과는 다른 개념임. (자료: 영국 국세청, “Distributions: general: dividends and tax law”,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15200>, 검색일자: 2022. 8. 16.)

176) ‘주식에 관한(in respect of shares)’ 거래가 아닌 경우 분배로 간주되지 않음. 예를 들어 주주임과 동시에 임직원인 자에게 제공되는 합리적인 이익은 분배로 보지 않음

177) 자본의 상환(repayment of capital)은 제외함

178) 비상업증권 관련 이자 및 기타 분배는 회사가 그 증권에 대하여 담보한 원금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상업적 수익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05조),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원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상업 수익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함

179) 특정증권 관련 이자 및 기타 분배(이하 ‘이자 등’)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15조),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금의 상환 또는 비상업증권의 이자 및 기타분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A) 주식 및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한 이자 등(회사가 증권 발행에 대한 전체 대가를 받는 경우 제외)

(B)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 또는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상장 증권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된 증권 제외)

(C) 회사에 의해 지급되는 담보 원금의 사용 대가가 회사 사업(사업부문) 등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

(D)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증권에 대한 이자 등

(E)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발행회사와 관련된 회사 또는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funded company)가 보유한 지분 증권에 대한 이자 등(자금을 지원받는 회사란, 주식발행회사 또는 그와 연결된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약정이 있는 회사를 말함(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17조 제3항))

관련 이자 및 기타 분배

- 회사와 주주 간 자산 또는 부채 이전에 따라 분배로 간주되는 금액¹⁸⁰⁾
 - 주주에게 이전된 효익의 금액이나 가치가 주주(양수자)로부터 받은 새로운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그 초과액을 분배한 것으로 간주함
 - 회사가 주주에게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을 시장가치 미만으로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이 발생할 수 있음
- 자본금 상환 후 무상증자(Bonus issue following of share capital)¹⁸¹⁾ 및 무상증자 후 자본금의 상환(Distribution following a bonus issue)¹⁸²⁾에 따라 분배로 간주 되는 금액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 과세 방법¹⁸³⁾, 184)

-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다소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사실상 분류과세 되는 특징이 있음¹⁸⁵⁾
 - 배당소득은 저축 및 투자소득(savings and investment income)¹⁸⁶⁾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180)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20조

181)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22조

182)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26조

18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p. 252~253

184) 영국 국세청, "Tax on dividends", <https://www.gov.uk/tax-on-dividends>, 검색일자: 2022. 7. 10.

185)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종합과세로도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분류과세(정유석(2020), p. 35) 또는 구분과세(Schedular system) (전병목·이승식(2006), p. 20)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186) 저축 및 투자소득에는 배당(dividends), 이자(interest), 사용료소득(royalty), 부동산소득(immovabel property), 신탁소득(trust) 등 자본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됨. 다만 자본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자체는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별도 과세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48)

-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 구간에 따라 8.75%, 33.75%, 39.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표 III-5〉 참고)¹⁸⁷⁾
-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 구간은 기본세율(Basic rate), 고세율(Higher rate), 추가 세율(Additional rate)로 구분하며,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20%, 40%, 45%임(2022/23 기준)¹⁸⁸⁾, ¹⁸⁹⁾
- 배당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중 가장 높은 세율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¹⁹⁰⁾
- 즉 전체 종합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과 높은 세율 구간 사이에 걸쳐져 있는 경우,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을 먼저 적용함

〈표 III-5〉 영국의 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 및 배당소득세율

(단위: GBP(파운드), %)

세율 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¹⁾ (taxable income)	세율	
		종합소득	배당소득
기본세율	37,700 이하	20	8.75
고세율	37,700 초과 150,000 ²⁾ 이하	40	33.75
추가 세율	150,000 ²⁾ 초과	45	39.35

주: 1)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기준이며, 기본공제 12,570파운드(2022/23 기준)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2) 기본공제는 10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2파운드당 1파운드씩 감소하여 125,140을 초과할 경우 영(0)이 됨

자료: 영국 「재정법 2022」(Finance Act 2022) 제2조 및 제4조; 영국 국세청,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https://www.gov.uk/income-tax-rates>; "Tax on dividends", <https://www.gov.uk/tax-on-dividends>, 검색일자: 2022. 7. 10.

187) 영국 「소득세법 2007」 제8조; 13조; 13A조

188) 다만 스코틀랜드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도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됨(2022/23 기준)(자료: 영국 국세청, "Income Tax in Scotland", <https://www.gov.uk/scottish-income-tax>, 검색일자: 2022. 7. 12.)
(단위: 파운드(GBP), %)

구분	과세소득	세율
Starter rate	12,570 초과 14,732 이하	19
Basic rate	14,732 초과 25,688 이하	20
Intermediate rate	25,688 초과 43,662 이하	21
Higher rate	43,662 초과 150,000 이하	41
Top rate	150,000 초과	46

189) 영국의 과세 연도는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차기연도 3월 31일까지로, 2022/23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를 의미함. 이하 동일

190) 영국 「소득세법 2007」 제16조

- 배당소득 과세표준은 배당소득에서 배당금 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 미 사용된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음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2,000파운드(2022/23 기준)까지는 과세하지 않음(dividend allowance, 배당금 공제)¹⁹¹⁾
 -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연간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는 12,570파운드(2022/23 기준)이며,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배당소득 및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하 ‘기타 종합소득’이라 함)이 존재하는 경우 세율 적용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봄(〈표 III-6〉 참고)¹⁹²⁾
 - 사례1: 배당소득과 종합소득 모두 기본세율 구간 적용¹⁹³⁾
 - 기타 종합소득 = 29,570파운드, 배당소득 = 3,000파운드
 - 총 종합소득금액 = 29,570(기타 종합소득)+3,000(배당소득) = 32,570파운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32,570 - 12,570(기본공제) = 20,000파운드이므로 기타 종합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기본세율 구간을 적용함
 - 기타 종합소득세 = {29,570 - 12,570(기본공제)} × 20%(기본세율) = 3,400파운드
 - 배당소득세 = {3,000 - 2,000(배당금공제)} × 8.75%(기본세율) = 87.5파운드
 - 사례2: 배당소득과 종합소득 모두 기본세율 구간 적용
 - 기타 종합소득 = 3,000파운드, 배당소득 = 29,570파운드
 - 총 종합소득금액 = 3,000(기타 종합소득)+29,570(배당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32,570 - 12,570(기본공제) = 20,000파운드이므로 기타 종합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기본세율 구간을 적용함
 - 기타 종합소득 금액이 기본공제보다 낮으므로 세액은 산출되지 않으며, 미 사용된 기본공제 9,570파운드는 배당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191)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pi_uk_s_1.2.2.%23epi_uk_s_1.2.2., 검색일자: 2022. 7. 10.

192) 영국 국세청 예시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함

193) 영국 국세청, “Tax on dividends”, <https://www.gov.uk/tax-on-dividends>, 검색일자: 2022. 7. 10.

- 배당소득세 = $\{29,570 - 9,570(\text{기본공제 미사용분}) - 2,000(\text{배당금공제})\} \times 8.75\%$
(기본세율) = 1,575파운드
- 사례3: 종합소득은 기본세율, 배당소득에는 기본세율 및 고세율 구간 적용
 - 기타 종합소득 = 29,570파운드, 배당소득 = 24,000파운드
 - 총 종합소득금액 = 29,570(기타 종합소득) + 24,000(배당소득) = 53,570파운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53,570 - 12,570(기본공제) = 41,000파운드이며, 기타 종합소득 17,000(= 29,570 - 12,570)은 기본세율, 배당소득 중 20,700(= 37,700 - 17,000)은 기본세율, 기본세율 구간을 초과하는 3,300은 고세율 구간을 적용함
 - 기타 종합소득세 = $\{29,570 - 12,570(\text{기본공제})\} \times 20\%$ (기본세율) = 3,400파운드
 - 배당소득세 = $\{20,700 - 2,000(\text{배당금공제})\} \times 8.75\%$ (기본세율) + $3,300 \times 33.75\%$
= 2,750파운드
- 사례4: 종합소득에 기본세율 및 고세율, 배당소득은 고세율 구간 적용
 - 기타 종합소득 = 50,570파운드, 배당소득 = 3,000파운드
 - 총 종합소득금액 = 50,570(기타 종합소득) + 3,000(배당소득) = 53,570파운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53,570 - 12,570(기본공제) = 41,000파운드이며, 기타 종합소득 38,000(= 50,570 - 12,570) 중 37,700¹⁹⁴⁾까지는 기본세율, 기본세율 구간을 초과한 300 및 배당소득 3,000에 대해서는 고세율 구간을 적용함
 - 기타 종합소득세 = $37,700 \times 20\%$ (기본세율) + $(50,570 - 50,270) \times 40\%$ (고세율)
= 7,660파운드
 - 배당소득세 = $\{3,000 - 2,000(\text{배당금공제})\} \times 33.75\%$ (고세율) = 33.75파운드

194)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한계 과세표준(50,270 - 12,570(기본공제)) = 37,700 파운드

〈표 III-6〉 배당소득 및 그 외 종합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세율 적용 사례(영국)

(단위: 파운드)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기타 종합소득 ¹⁾ (A)		29,570	3,000	29,570	50,570	
배당소득 (B)		3,000	29,570	24,000	3,000	
총 종합소득 (C=A+B)		32,570	32,570	53,570	53,570	
기본 공제 (D)	기타 종합소득(D ₁)	12,570	3,000	12,570	12,570	
	배당소득 (D ₂)	-	9,570	-	-	
		12,570	12,570	12,570	12,570	
과세 표준 (E)	기타 종합소득 (F=A-D ₁)	17,000	-	17,000	38,000	
	배당소득 (G=B-D ₂)	3,000	20,000	24,000	3,000	
		20,000	20,000	41,000	41,000	
배당금 공제(H)		2,000	2,000	2,000	2,000	
세율 구간 별 과세 표준	기타 종합 소득	20% (기본세율 구간)	17,000	-	17,000	37,700
		40% (고세율 구간)	-	-	-	300
	배당 소득 (I=G-H)	8.75% (기본세율 구간)	1,000	18,000	18,700	-
		33.75% (고세율 구간)			3,300	1,000
종합소득세 (T ₁ = F×종합소득세율)		3,400	-	3,400	7,660	
배당소득세 (T ₂ = I×배당소득세율)		87.5	1,575	2,750	33.75	
총 소득세 (=T ₁ +T ₂)		3,487.5	1,575	6,150	7,693.75	

주: 1) 기타 종합소득은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을 말함
 자료: 영국 국세청, "Tax on dividends", <https://www.gov.uk/tax-on-dividends>, 검색일자: 2022. 7. 10.
 예시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¹⁹⁵⁾ 세전 배당소득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신고서(Self Assessment tax return)를¹⁹⁶⁾ 작성하고 배당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함^{197), 198)}
- 세전 배당소득이 1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영국 국세청 헬프라인(helpline)을 통하여 소득을 통지하여야 함
 - 기존 원천징수시스템(PAYE: Pay As You Earn)¹⁹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금코드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급여 또는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미 자체평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배당소득이 배당금 공제액(2,000파운드)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 통지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배당소득공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²⁰⁰⁾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음²⁰¹⁾

195)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2 Ma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k_s_1.5.&refresh=1646724969779%23ita_uk_s_1.10.3.2., 검색일자: 2022. 7. 10.

196) Self Assessment(SA)는 영국의 자진신고 과세 제도를 말함. 근로·연금·저축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시스템(PAYE: Pay As You Earn)에 의하여 과세 종결될 수 있으나, 그 외 자진신고의무가 있는 자(자영업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또는 세전 10,000파운드 이상의 저축 및 투자소득이 있는 자 등)는 자체평가신고서(‘SA100’ 서식)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작성·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

197) 영국 국세청, “Tax on dividends”, <https://www.gov.uk/tax-on-dividends>, 검색일자: 2022. 7. 10.

198) Low Income Tax Refrom Group, “Do I need to complete a tax return?(Updated on 10 June 2022)”, <https://www.litr.org.uk/tax-guides/tax-basics/do-i-need-complete-tax-return>, 검색일자: 2022. 8. 2.

199) 급여 또는 연금, 저축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로서 종결되는 시스템을 말함

200) IBFD, “United Kingdom - Private Investment Income - Country Tax Guides - 1. Taxation of Resident Individuals (Last Reviewed: 27 Ma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pi_uk_s_1.2.2.%23epi_uk_s_1.2.2., 검색일자: 2022. 7. 10.

- 배당소득공제는 배당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임(dividend allowance)
- 배당금 공제액은 연간 2,000파운드(2022/23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됨
 - 배당금 공제액은 배당소득공제를 최초 도입한 2016년 4월 6일부터 2018년 4월 5일까지는 연간 5,000파운드였으나, 2018년 4월 6일부터는 2,000파운드로 감소함
- 영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2016년 4월 5일 이전까지는 배당 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였으나 2016년 4월 6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배당소득공제 방식으로 대체함
 - 배당세액공제는 수령한 배당금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배당가산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임(tax credit)
 - 2016년 4월 이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20%, 40%, 45% (2013년 4월 이전은 50%), 배당소득세율은 10%, 33.75%, 37.5%(2013년 4월 이전은 42.5%)임²⁰²⁾
 - 배당소득공제방식에 따른 구간별 배당소득의 유효 세율은 각각 0%(basic rate), 25%(Higher rate), 30.56%(2013년 4월 이전은 36.11%)이었음²⁰³⁾
 - 2016년 4월 이후 배당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 방법을 변경하면서 구간별 배당소득세율은 7.5%, 32.5%, 38.1%로 변경하였으며, 2022년 4월 이후 추가 세수확보를 위하여 8.75%, 33.75%, 39.35%로 세율을 인상함²⁰⁴⁾

201) 영국 「법인세법 2009」 제1305조

202) 영국 국세청, "Official Statistics - Rates of Income Tax",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rates-of-income-statistics>, 검색일자: 2022. 8. 3.

203) 영국 국세청, "Tax on dividends before 6 April 2016", <https://www.gov.uk/tax-on-dividends/previous-tax-years>, 검색일자: 2022. 7. 13.

204) 2021년 9월 7일, 영국 총리는 향후 3년 동안 의료 및 사회 복지에 대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건강·사회복지부담금을 도입하고 구간별 배당소득세율을 1.25%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자료: FT Adviser, "Change to dividend tax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https://www.ftadviser.com/ftadviser-focus/2022/03/09/change-to-dividend-taxation-past-present-and-future/?page=3>, 검색일자: 2022. 7. 13.)

〈표 III-7〉 영국의 2016년 이후 배당소득세율 변화

세율 구간	세율		
	2016/17 이전	2016/17~2021/22	2022/23 (현재)
기본세율	10	7.5	8.75
고세율	33.75	32.5	33.75
추가 세율	37.5 ¹⁾	38.1	39.35

주: 1) 2013년 4월 이전에 적용되는 추가 세율은 42.5%
 자료: 영국 국세청, 본문 내용 저자 요약

- 배당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2016년 4월 5일 이전까지는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적격 분배(non-qualifying distributions)’를 규정하였으나, 2016년 4월 6일 이후 이중과세 조정 방법이 배당소득공제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념은 폐지됨²⁰⁵⁾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 과세 방법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기타 분배금(이하 ‘수입배당금’이라 함)의 경우 면제 분배(exempt distribution, 이하 ‘익금불산입’)²⁰⁶⁾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며,²⁰⁷⁾ 2022/23 기준 법인세율은 19%임²⁰⁸⁾

205) 영국 국세청, “Dividends and other company distributions: meaning of distribu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avings-and-investment-manual/saim5030>, 검색일자: 2022. 8. 22.

206) 영국 「법인세법 2009」원문에서는 ‘exempt distribution(면제 분배)’ 또는 ‘exempt classes(면제 유형)’로 표현하며,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배의 의미로 해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익금 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으로 표기함

207)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A조 제1항

208) 영국 「법인세법 2010」 제3조 제1항, 「Finance Act(FA) 2021」 제6조

- 2023/24부터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익이 5만 파운드 이하(소규모 이익)인 회사는 기존과 같이 19%(standard small profits rate)를 적용함²⁰⁹⁾, ²¹⁰⁾
 - 이익이 5만 파운드 초과 25만 파운드 이하인 회사는 표준한계완화비율(standard marginal relief fraction: 3/200)에 의해 실효세율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²¹¹⁾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²¹²⁾

-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100% 과세 면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²¹³⁾ 지급법인의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²¹⁴⁾
-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을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킨 후 법에 열거된 배당금에 대하여 면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됨
- 영국 「법인세법(Coportation Tax Act: CTA) 2009」 Part9A에서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음²¹⁵⁾
- 대부분의 배당금(dividend)과 분배금(distribution)이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함
 - 다만 분배로 간주되는 비상업증권²¹⁶⁾ 및 특정증권(전환증권 등)²¹⁷⁾에 기초한 이자 및 기타 분배(이하 '특정 비배당 분배(certain non-dividend distributions)'라고 함)²¹⁸⁾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209)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8A조, 영국 「재정법 2021」 제7조
 210) 영국 국세청, "Corporation Tax charge and rates from 1 April 2022 and Small Profits Rate and Marginal Relief from 1 April 20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charge-and-rates-from-1-april-2022-and-small-profits-rate-and-marginal-relief-from-1-april-2023/corporation-tax-charge-and-rates-from-1-april-2022-and-small-profits-rate-and-marginal-relief-from-1-april-2023>, 검색일자: 2022. 8. 22.
 211) 이익이 10만 파운드인 경우 경감 혜택은 (25만 - 10만)×3/200 = 2,250 파운드로 계산하며,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은 10만×25%-2,250 = 22,750 파운드(실효세율 22.75%)가 됨
 212)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31 March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uk_s_1.2.3.%23cta_uk_s_1.2.3., 검색일자: 2022. 7. 14.
 213)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A조 제3항
 214) 영국 「법인세법 2009」 제1305조
 215)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함
 216)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05조
 217)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15조

-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배당 수취법인을 소규모법인(small companies)²¹⁹과 비소규모법인(companies that are not small)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익금불산입 대상이 됨²²⁰
 - 내국법인(이중 거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²²¹
 - 분배로 간주되는 특정 비배당 분배가 아닐 것²²²
 - 조세회피계획(tax advantage scheme)에 따른 배당이 아닐 것
 - 다만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조세회피계획으로 보지 않음
- 비소규모법인의 경우 특정 비배당 분배가 아니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됨(exempt classes)²²³
 - ① 피지배법인(controlled company)으로부터 받는 분배²²⁴
 - ② 상환이 불가능한 보통주(non-redeemable ordinary shares)로부터 받는 분배²²⁵
 - ③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의 주식(10% 미만 보유 주식)으로부터 받는 분배²²⁶

218) 영국 「법인세법 2010」 제1001조에서 비상업증권(제1005조) 및 특정증권(제1015조)에 기초한 이자 및 기타분배를 각각 C distribution 및 D distribution 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CD distribution’ 라고도 함

219) 소규모법인은 근로자 50명 이하이고 당기순이익 1,000만 유로 이하의 회사를 말하며(European Commission’s Recommendation 2003/361/EC, 2003. 5. 6, pp. 44~46), 해당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개방형(open-ended)투자회사, 승인된 단위신탁(unit trust), 보험회사, 등록협동조합(friendly society)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법인 대상에서 제외함(「법인세법 2009」 제931S조)

220)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B조;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652000>, 검색일자: 2022. 6. 2.

221) 영국과 무차별조항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체결한 적격지역(qualifying territory)에 위치한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 CFC)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지급법인의 손금에 산입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 법인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음

222) ‘non-CD distribution’ 라고도 함

223)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D조;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653020>, 검색일자: 2022. 6. 2.

224) 법인(배당수취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말하며, 공동 지배만 한 회사가 40% 이상, 다른 회사가 40~55%의 지분을 갖는 경우를 말함(영국 「법인세법 2009」제931E조)

225)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F조

226) 배당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배당가능이익 또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10%미만의 분배를 받는 경우를 말함(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G조)

- ④ 조세절감을 의도하지 않은 거래에서 파생되는 분배(경미한 금액은 제외)²²⁷⁾
- ⑤ 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²²⁸⁾

□ 다만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수취 배당금이 다음 거래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음

- ① 피지배외국법인 규칙을 악용한 거래²²⁹⁾
- ② 준우선주(quasi-preference) 또는 준상환주(quasi-redeemable shares)와 관련된 거래²³⁰⁾
- ③ 포트폴리오 보유 규칙을 악용한 거래²³¹⁾
- ④ 부채(대출) 관계의 성질을 가진 거래²³²⁾
- ⑤ 배당법인이 배당금에 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거래²³³⁾
- ⑥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조세회피거래²³⁴⁾
- ⑦ 정상가격거래(arm's length terms)가 아닌 거래²³⁵⁾
- ⑧ 사업소득(trade income)을 전환하기 위한 거래²³⁶⁾

227)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H조

228)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I조

229)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J조

230)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K조

231)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L조

232)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M조; 부채로 분류되는 주식을 말함

233)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N조

234)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O조

235)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P조

236) 영국 「법인세법 2009」 제931Q조

4. 독일

가. 배당소득의 범위²³⁷⁾²³⁸⁾

- 독일의 「세법」상 배당소득 정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것을 말함
 - 「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자본자산소득(Kapitalvermögen)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의미일 뿐 열거되지 않은 소득 또한 자본자산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²³⁹⁾
 - 「법인세법」에는 배당소득 범위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의 과세 소득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함²⁴⁰⁾

- 독일 「소득세법」(EstG: Einkommensteuergesetz)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에 지분 참여나 투자를 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해당 주식에서 유래한(aus Aktien) 이익분배(배당금), 수익(Ausbeuten) 기타 급부(sonstige Bezüge)는 배당소득에 해당함²⁴¹⁾
 - 회사가 주주(지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대가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기인(Grund des Gesellschaftsverhältnisses)’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즉 회사가 지급하는 대가가 지분참여가 아닌 채권채무관계(대출, 임대차, 노동계약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37) 김무열(2020), p. 201

238) 송동진(2017), pp. 31~33

239) 독일은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자본자산소득(Kapitalvermögen)에 대한 개념을 창설하고, 2009년 1월부터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인 Abgeltungssueuer를 운영하고 있음. 자본자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의미함(홍범교·구문정·홍성희(2016), p. 101; 오윤·임동원(2013), p. 71)

240) 독일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241)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예외적인 경우로서 회사가 지급한 대가 중에서 숨은 이익의 분배(verdeckte Gewinnausschüttungen)는 기타 급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처리함²⁴²⁾
-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익분배는 아니지만 그와 경제적으로 유사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 또한 배당소득으로 봄²⁴³⁾
 - 상호보험 및 연기금협회, 민법상 기타법인, 비법인 협회·기관·재단·다른 법률에 따른 특수목적재단의 용역 사업
 - 공법에 따른 법인의 상업적 사업
- 배당소득에는 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현물배당도 포함되지만, 주식배당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244), 245)}
 - 다만 주식배당 이후 신규 자본금을 상환(repayment of the new capital)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독일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Ausschüttbaren Gewinn)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분배(배당금)[Bewinnanteile(Dividenden)]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세무상 출자계정²⁴⁶⁾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²⁴⁷⁾
 -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242)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숨은 이익의 분배는 법인이 주주에게 과도한 급여 등을 사업 경비로 지급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이익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연방재정법원(BFH) 판례에서는 '회사의 자산감소 또는 회피된 자산의 증가로 회사관계를 통하여 야기되고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공개적인 배당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함(BFH vom 22.02.1989 I R 44/85, BStBl. 1989 II 475; 송동진(2017), pp. 33~35)

243)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제10호(a)

244)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5 Jul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61241721495%23ita_de_s_1.5.1., 검색일자: 2022. 8. 23.

245)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없음

246) 독일 「법인세법」 제27조. 세무상 출자계정(Steuerliches Einlagekonto)이란, 주주의 (명목)납입 자본과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법인 소득(이익)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공개출자(offene Einlagen)에 따른 자본준비금(Kapitalrücklage)과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n)로 이루어짐. 세무상 출자계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병목·박수진·서동연(2021), pp. 92~94 참고

247)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문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²⁴⁸⁾

1) 배당소득 과세 방법

-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자본자산소득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²⁴⁹⁾
 - 자본자산소득은 보조적 성격의 소득으로, 자본자산소득의 성격을 가진 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농림업·사업(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본자산소득으로 보지 않음
-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방법은 배당소득의 원본이 되는 주식이 개인 지분인지 사업용 지분인지에 따라 달라짐²⁵⁰⁾
 - 회사에 대한 주주의 참여 정도(degree of participation), 보유기간 또는 회사의 활동(activity of the company)은 배당소득 과세 방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개인 지분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연대부가세 포함 26.375%)²⁵¹⁾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며,²⁵²⁾ 완납적 원천징수(Abgeltungssueuer, Final withholding tax)를 통해 과세함²⁵³⁾
 - 다만 연대부가세(Solidaritätzuschlag:solidarity levy) 5.5%는 별도로 과세하며²⁵⁴⁾, 이를 포함한 최종 세율은 26.375%가 됨

248) IBFD, "Germany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Last Reviewed: 15 Jul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de_s_006.html%23cta_de_s_6., 검색일자: 2022. 8. 23.

249)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5호

250) IBFD, "Germany - Private Investment Income - Country Tax Guides - 1. Taxation of Resident Individuals (Last Reviewed: 1 Ma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pi_de_s_1.2.2.%23epi_de_s_1.2.2., 검색일자: 2022. 8. 23.

251) 연대부가세(Solidaritätzuschlag:solidarity levy) 5.5%는 별도로이며, 이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26.375%가 됨

252) 독일 「소득세법」 제32d조 제1항

253)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5b항

254) 독일 「연대부가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조

- 이 경우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1인당 801유로(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1,602유로)를 소득공제함²⁵⁵⁾, ²⁵⁶⁾
 - 모든 자본자산소득에 대하여 금융 비용, 계좌(depot) 관리 비용, 컨설팅 비용과 같이 배당소득과 경제적 관련이 있는 실제 비용(Werbungskosten)은 공제할 수 없음²⁵⁷⁾
- 종합소득세율이 자본소득의 원천징수세율(25%)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자본자산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Günstigerprüfung; 자본자산 소득 비교 과세)²⁵⁸⁾, ²⁵⁹⁾
 - 즉,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로 과세됨
 - 종합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종합 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하여 분리 과세 함
 - 종합소득세율은 면세점인 10,347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최소 14%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²⁶⁰⁾
 -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며, 이 원천징수 세액이 납부할 총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음²⁶¹⁾

255)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9항

256) 소득에서 저축자 일괄공제 금액까지 과세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면제신청서(Freistellungsauftrag, Exemption order)'를 제출해야 함. 이는 각 신용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각 기관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면제금액의 비율을 지정 가능함 (이상엽·송은주·서동연, 2020, p. 98; steuertipps, "Freistellungsauftrag," <https://www.steuertipps.de/lexikon/f/freistellungsauftrag>, 검색일자: 2022. 9. 13.)

257) 이상엽·송은주·서동연(2020), p. 91;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2007) pp. 837~841.

258) 독일 「소득세법」 제32d조 제6항

259) 자본소득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되어있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종합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납세자는 자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할 때 실효세율이 25%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 종합신고를 할 수 있음. 납세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종합신고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2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오윤(2012), p. 186)

260) 독일 「소득세법」 제32a조

261) 독일 「소득세법」 제36조 제2항, 제4항 2문

- 이 경우에는 소득 관련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²⁶²⁾

〈표 Ⅲ-8〉 독일의 종합소득세율(2022년)

(단위: 유로, %)

소득구간		세율
1구간(기본공제, Grundfreibetrag)	10,347 이하	0
2구간	10,348 ~ 14,926	14 ~ 23.97
3구간	14,927 ~ 58,596	23.97 ~ 42
4구간	58,597 ~ 277,825	42
5구간(부유세, Reichensteuer)	277,826 이상	45

주: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기본공제는 10,347유로의 2배(20,694유로)를 적용함
 자료: 독일 「소득세법」 제32a조; Bloomberg Tax, “Country Guides, Germany, 6. Personal Tax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591347240>. 검색일자: 2022. 6. 21.

- 예외적으로 사업용 지분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부분과세제도 (Teileinkünfteverfahren, half-income system)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²⁶³⁾
 - 개인주주가 물적 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보유하거나, 최소 1%의 지분을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²⁶⁴⁾²⁶⁵⁾
 -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배당 소득의 60%만 과세대상이 됨²⁶⁶⁾

262) 이상엽·송은주·서동연(2020), pp. 90-91; FG Baden-Württemberg Urteil vom 17.12.2012, 9 K 1637/10. 2012년 12월 17일 Baden-Württemberg 금융 법원의 판결(Az. 9 K1637/10)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자산의 소득에서 실제 소득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25%)보다 낮은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관련 비용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263)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40호

264) 독일 「소득세법」 제32d조 제2항 제3호

265) 개인주주는 독일 「소득세법」 제32d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분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배당소득을 자본자산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자료: fima.de, “Teileinkünfteverfahren - Definition, Voraussetzungen und Beispiele”, <https://www.firma.de/rechnungswesen/teileinkuenfteverfahren-definition-voraussetzungen-und-beispiele/>, 검색일자: 2022. 6. 21.)

- 따라서 배당소득과 관련된 실제 필요경비도 60%만 공제할 수 있음²⁶⁷⁾
- 이 경우에도 자본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Kapitalertragsteuerabzug)는 이루어지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함^{268), 269)}
- 원천징수세액은 60%가 아닌 100% 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독일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을 자본자산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를 적용하며,²⁷⁰⁾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즉, 사업용 지분)에 대해서만 부분과세제도(40% 소득공제)를 적용함
- 2008년 「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하였으며,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있었음
- 2000년 12월 이전까지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가산액(imputation system)을 통한 배당세액공제 방식(tax credit)을 적용함²⁷¹⁾

266) 법인세와의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장치이며, 2014년부터 40% 면제는 분배회사(배당금 지급법인)의 소득에서 배당금 지급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독일 「법인세법」 제8 b조 제1항 제2문)

267) 독일 「소득세법」 제3c조 제2항; 김무열, 2020. pp. 203~204

268) 독일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3문

269)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5 April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de_s_001.html%23ita_de_s_1.5.1., 검색일자: 2022. 6. 21.

270)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이원적 소득세제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자본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함

271) Jones Day Reavis & Pogue, “International Tax Briefing German Tax Reforms of 2000 and 2001— A Summary for Foreign Investors (January 2002)”, <https://www.jonesday.com/files/Publication/21169c60-935e-4767-b6e7-d8197c91bde/Attachment/14dbff53-7238-4d41-9eaa-f7144cf7fce8/German%20Tax%20Reforms.pdf>, 검색일자: 2022. 8. 25.

- 이후 200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세액공제를 폐지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배당소득의 50%만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는 절반과세제도(half-income system)²⁷²⁾를 도입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 이후 폐지됨
 - 절반과세제도하에서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의 원천이 개인 지분인지 사업용 지분 인지 구분하지 않았음
- 한편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배당금)는 지급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되지 않음²⁷³⁾

다.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 과세 방법

- 독일 「법인세법」에 따르면 독일의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en)²⁷⁴⁾는 무제한 납세의무(unbeschränkte Steuerpflicht)를 부담하며,²⁷⁵⁾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276), 277)}
- 현행 법인세율은 15%(연대부가세 포함 15.825%)²⁷⁸⁾임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법인주주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의 95%에 대하여 법인세를

272) 배당소득의 50%만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므로 배당소득 관련 필요경비 또한 50%만 공제가능함

273) 독일 「법인세법」 제8조 제3항 제2문

274) 유럽형 회사, 주식회사, 주식형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함

275) 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276) 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277) 송동진(2017), p. 32

278)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solidarity levy) 5.5%는 별도이며, 이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15.825%가 됨

면제함²⁷⁹⁾, 280)

- 원칙적으로 법인주주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음²⁸¹⁾
 - 이 규정은 다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이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²⁸²⁾
 - 다만 수입배당금의 5%는 공제 불가능한 비용(nicht als Betriebsausgaben abgezogen werden)으로 의제하여 다시 과세소득에 가산하므로,²⁸³⁾ 결과적으로 수입배당금의 95%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 한편 배당금을 발생시키는 지분의 취득 또는 보유의 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비용(금융 비용 포함)은 공제할 수 있음²⁸⁴⁾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다음 경우에 적용 가능함²⁸⁵⁾
- 법인주주는 해당 연도 초에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최소 10% 이상²⁸⁶⁾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

279)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9항 및 제10a항

280) 즉, 수입배당금의 5%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

281)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282)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제2문. 2014년 이후부터 적용됨

283)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5항 제1문

284)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5항 제2문: 독일 「소득세법」 제3c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285) Bloomberg tax, "Portfolio 7140-2nd: Business Operations in Germany- V. Taxation of Resident Corporations- B. Corporate Income Tax- 4. Calculation of Gross Income- c. Dividend Income",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RLC1AH8#section\(4\)\(4\)\(c\)_0](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RLC1AH8#section(4)(4)(c)_0), 검색일자: 2022. 5. 26.

286) 2003년 3월 1일 이전에는 모든 법인주주가 다른 내국법인(외국 자회사 포함)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2011년 10월 20일자 판결(C-284/09)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최소 지분율 요건이 적용됨. 독일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지는 모회사의 경우 배당에 관하여 지급한 자본소득세를 신고절차에서 법인세로부터 공제함으로써 자본소득세가 결과적으로 청산된다. 그러나 독일에 대하여 제한납세의무를 지는 모회사(예를 들어 프랑스 모회사)는 자본소득세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독일에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모회사와 제한납세의무를 지는 모회사 간에는 배당에 관한 과세상의 취급이 다르게 된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러한 규율이 유럽연합의 자본이동 자유에 반한다고 보아 독일을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사안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독일의 과세제도가 유럽연합의 자본이동 자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辻美枝, "国境を跨ぐ不動産投資と課税", 信託研究奨励金論集 第37号, 2016, 18면.(자료: 이중교·황남석(2021), p. 64(각주87))

- 배당지급법인 단계에서 법인소득공제 대상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²⁸⁷⁾
 - 연도 개시일자로 법인주주가 10% 미만의 지분²⁸⁸⁾을 보유한 경우²⁸⁹⁾
 - 주식발행법인이 배당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²⁹⁰⁾
 - 즉 수취 배당금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²⁹¹⁾
 - 건강 보험·생명 보험 회사 또는 특정 금융기관이 투자자산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²⁹²⁾
 - 다만 이러한 배당금은 조세조약 또는 EU모자회사 지침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비과세 대상임²⁹³⁾

287) Bloombergtax, "Country Guides, Germany, 2. Corporate Tax Computation and Administration-2.5. Intercompany Dividend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QLPSH8?jsearch=bna%2520gtg%2520de%25202.9.1#section\(5\)_0](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QLPSH8?jsearch=bna%2520gtg%2520de%25202.9.1#section(5)_0), 검색일자: 2022. 5. 26.

288) 독일에서는 이를 포트폴리오 지분 보유(portfolio holdings), 부동산주(Streubesitz)라고 함

289)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4항; 즉,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수취한 배당금은 100% 익금에 산입함

290)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제2문

291)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제4문

292)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7항, 제8항

293)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9항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개인주주의 배당소득과세제도

- 조사 대상국의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보면, 국가별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함
-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미국은 비적격배당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율(10~37%)을 적용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적격 배당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0/15/20%)을 적용함
 - 영국은 배당을 포함한 '저축 및 투자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20/40/45%)보다 낮은 세율(8.7/33.75/39.35%)을 적용함
 - 호주는 모든 배당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0/19/32.5/37/45)을 적용함
- 우리나라와 독일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어 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을 차별화하고 있음

- 독일은 개인 지분과 사업용 지분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사업용 지분이란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법인의 경제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지분율 또는 기업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과세 방식을 차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개인 지분의 경우,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자신의 한계세율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사업용 지분의 경우,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의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으로의 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과세만 적용됨
 - 종합과세되는 사업용 지분의 경우, 배당소득의 60%만 과세소득에 포함함

- 배당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대하여 호주와 독일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만 한국, 미국, 영국은 인정하지 않음
 - 호주는 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의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함
 - 독일은 개인 지분으로 분리과세하는 경우 인당 801유로 공제를 인정하고 그 외 실제 발생 경비는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용 지분은 실제 필요경비의 60%만 공제할 수 있음
 - 사업용 지분의 경우 실제 경비의 60%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60%만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므로 필요경비 역시 60%만 인정하는 것임
 - 다만 독일 금융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자본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 자본자산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관련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표 IV-1〉 주요국의 개인주주 배당소득과세제도

		과세 방식	세율	필요경비
한국		분리과세	14%	인정 안 됨
		종합과세	소득세율: 6/15/24/35/38/40/42/45 %	
미국		종합과세	- 적격 배당 ¹⁾ : 0/15/20의 자본 이득세율 - 비적격배당: 10/12/22/24/32/35/37의 일반소득세율	인정 안 됨
호주		종합과세	소득세율: 0/19/32.5/37/45	관련 비용 공제
영국		종합과세	8.7/ 33.75/ 39.35 ²⁾	인정 안 됨
독일	개인 지분	분리 과세	25% ³⁾	1인당 801유로 (실제 필요경비 인정 안 됨)
		종합 과세	- 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 세율 보다 낮은 경우 선택 - 세율: 0/14/ 23.97/42/45	관련 비용 공제
	사업용 지분 ⁴⁾	종합 과세	- 사업소득으로 과세(선택) - 소득세율: 0/14/23.97/42/45	실제 필요경비의 60% 공제

주: 1) 적격 배당이란 비적격 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임
 2) 저축 및 투자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며, 일반소득세율은 20/ 40/ 45%임
 3) 연대부가세 포함 시 26.375%
 4) 사업용 지분이란 개인주주가 물적 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보유하거나, 최소 1%의 지분을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며, 사업용 지분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의 과세 선택가능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 각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 조정방식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우리나라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방식, 미국과 영국은 저율과세 방식에 해당하며, 독일은 지분율 등에 따라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거나 부분소득공제 방식에 의해 조정하고 있음

- 임퓨테이션 방식이란 수취한 배당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와 호주는 모두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과세가 부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호주는 전액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배당을 수령한 주주단계에서 법인세의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기준으로 배당가산율을 적용하여 귀속법인세를 산정하고, 이를 가산한 과세표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귀속법인세를 차감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은 10%, 20%, 22%, 25%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0%보다 높은 법인세율에 의해 법인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 호주는 배당에 대한 세금은 개인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법인이 배당에 대하여 세금을 선납한 후 개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임
 - 따라서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실제 지급한 배당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세자에게 이전하면, 주주는 이전받은 배당세액(프랭킹크레딧)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다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공제하므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호주는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임
- 미국과 영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배당 소득에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배당에 한해 저율과세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비적격 배당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하고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은 하지 않음
 - 적격 배당이란 미국법인 또는 적격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으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유 기간은 보통주는 배당락일 전후 ±60(총 121일) 동안 60일, 우선주는 배당락일 전후±90일(총 181일) 동안 90일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 한편, 영국은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연간 2,000 파운드의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음
 - 저율과세 및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요건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배당소득에 적용됨
 - 즉, 미국과 영국이 저율과세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적격 배당에 한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영국은 모든 배당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독일은 지분율 등에 따라 개인 지분과 사업용 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용 지분은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개인 지분은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음
- 사업용 지분이란 개인주주가 물적 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보유하거나, 최소 1%의 지분을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일종의 대주주 성격에 해당함
 - 사업용 지분의 경우 배당소득의 40% 소득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 이러한 방식을 ‘배당소득공제’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과세’라고 함
 - 사업용 지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중과세 조정은 없음
- 우리나라와 호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을 두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소득공제 한도액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2천만원 초과분 금융소득 총 수입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천만원 초과분 금융소득금액(귀속법인세 포함)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증가하는 세액 상당액을 의미함
 - 한편 호주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귀속법인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이 귀속 법인세를 초과하여 배당세액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영국의 경우 저율과세 외에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2,000파운드를 한도액으로 하며, 독일에서 사업용 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당 소득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표 IV-2〉 주요국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배당소득 과세 방식		이중과세조정제도		
			조정 방식	적용 요건	이중과세 조정금액
한국	분리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종합과세	부분임퓨테이션 (4단계 누진세율 중 10%의 낮은 법인세율로 조정)	① 법인세 과세된 소득을 재원 ②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 ③ 종합과세 대상		- 귀속법인세: 배당소득 × 11% ¹⁾ - 공제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²⁾
미국	종합과세	적격: 저율과세 (장기자본이득세율 적용)	① 미국법인 또는 적격 외국법인이 지급 ② 보유기간 - 보통주: 배당락일 전후±60(121일) 동안 60일 초과 보유 - 우선주는 배당락일 전후±90일(181) 동안 90일 초과 보유		해당 없음
		비적격: 조정 없음	해당 없음		
호주	종합과세	완전임퓨테이션 (단일세율인 법인세율로 조정)	① 법인세 과세된 배당 ³⁾ ② 내국법인 ⁴⁾ 으로부터 수취 ③ 보유기간: 보통주 45일(우선주 90일) ④ 세액공제 혜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어야 함 ⑤ 세액공제를 중복 청구할 수 없어야 함		- 귀속법인세: 배당하는 법인이 배당에 귀속되는 실제 법인세액을 주주에게 이전 ³⁾ - 공제 한도: [법인세 과세된 배당액 × (법인세율 / (1 - 법인세율))]
영국	종합과세	저율과세(별도 낮은 누진세율 적용)와 소득공제	요건 없음		2,000파운드 소득공제
독일	개인 지분	분리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종합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업용 지분 ⁵⁾	종합과세	소득공제	• 둘 중 하나 충족 ① 개인주주가 물적 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보유 ② 최소 1%의 지분을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주: 1) 배당가산율 = (법인세율 / (1 - 법인세율)) = (0.1 / (1 - 0.1)) ≃ 0.11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 수입금액 × 14%

3) 세전이익의 배당(unfranked dividend)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4) 호주 내국법인 또는 호주의 임퓨테이션제도를 선택한 뉴질랜드법인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분석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이중과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의 개인주주 세 부담과 개인기업 주주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고자 함
 - 이론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는 호주와 개인 지분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는 독일은 분석에서 제외함
 - 법인기업의 개인주주 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합인 총 세 부담에서 개인기업 주주라면 부담했을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과세제도를 반영하여 산출함²⁹⁴⁾
 - 국가별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구간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에서 다양한 세율 구간에 속한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및 지분율을 국가별로 상이하게 설정하였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100% 분배한다는 가정 하에 세 부담을 산출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100% 분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배당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표 IV-3>은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소득을 분배받은 주주의 세 부담을 산출한 것이고, <표 IV-4>는 법인기업 개인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한 총 세 부담과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을 산출한 것이며, 세 부담 산출을 위하여 다음의 상황을 가정함
 - 법인소득은 300억원이고 법인세를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 법인세율은 10~25%의 4단계 누진세율이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은 2021년 총 신고법인 수(906,325개) 중 0.011%인 103개 기업에 불과하므로 최고 세율의 적용은 제외함

294) 기본적인 산출방식은 김진수(2004)를 기초로 하며, 최근의 조세제도 및 국가별 조세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함

-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외의 소득은 없으며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개인소득세 산출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기본공제액인 150만원만 적용함
- 지분율은 주주단계에서의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하여 각각 0.07%, 0.5%, 1%, 98.43%를 적용함

〈표 IV-3〉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한국)

(단위: 원)

구분	내용			
소득금액	30,000,000,000			
주주(지분율)	A(0.070%)	B(0.500%)	C(1.000%)	D(98.430%)
소득금액	21,000,000	150,000,000	300,000,000	29,529,000,000
기본공제 ¹⁾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19,500,000	148,500,000	298,500,000	29,527,500,000
소득세 적용 세율	15%	35%	38%	45%
소득세 산출세액	1,845,000	37,075,000	94,030,000	13,221,975,000

주: 1) 개인의 기본공제 금액 1,500,000원을 차감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IV-4〉 법인기업 개인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한국)

(단위: 원)

구 분	내 용			
법인소득	30,000,000,000			
명목 법인세율 ¹⁾	10%/ 20% /22%			
법인세액	6,180,000,000			
배당가능이익 ²⁾	23,820,000,000			
개인주주(지분율)	A(0.070%)	B(0.500%)	C(1.000%)	D(98.430%)
법인세 부담액	4,326,000	30,9000,000	61,800,000	6,082,974,000
배당총수입금액 ³⁾	16,674,000	119,100,000	238,200,000	23,446,026,000
귀속법인세		10,901,000	24,002,000	2,576,862,860
배당소득금액		130,001,000	262,202,000	26,022,888,860
기본공제 ⁴⁾		1,500,000	1,500,000	1,500,000
종합소득과세표준		128,501,000	260,702,000	26,021,388,860
적용 세율	14%	14%, 35%	14%,38%	14%, 45%
①종합소득산출세액		25,875,350	74,866,760	11,638,024,987
②비교산출세액		16,674,000	33,348,000	3,282,443,640
한도액(=①-②)		9,201,350	41,518,760	8,355,581,347
배당세액공제액 ⁵⁾		9,201,350	24,002,000	2,576,862,860
소득세액	2,334,360	16,674,000	50,864,760	9,061,162,127
총 세 부담(법인세+소득세)	6,660,360	47,574,000	112,664,760	15,144,136,127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⁶⁾	4,815,360	10,499,000	18,634,760	1,922,161,127

주: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은 2021년 총신고법인수(906,325개) 중 0.011%인 103개 기업이므로 최고세율은 제외함

2) 배당가능이익 100%를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전액 조정대상배당소득으로 가정

4) 개인의 기본공제 금액 1,500,000원을 차감함

5) 배당세액공제액 = Min(귀속법인세, 한도액)

6)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4〉 법인기업 개인주주 총 세부담금액과 〈표 IV-3〉의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액임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개인주주 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합인 총 세 부담에서 개인기업 주주라면 부담했을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지분율 0.07%, 0.5%, 1%, 98.43%인 경우에 있어, 각각 4,815,360원, 10,499,000원, 18,634,760원, 1,922,161,127원으로 산출되었음
 -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지분율 0.07%에 해당하는 납세자와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그 외의 납세자 모두 이중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사업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에 추가되는 세 부담을 의미함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총 세 부담이 사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표 IV-5>는 미국에서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소득을 분배받은 주주의 세 부담을 산출한 것이고, <표 IV-6>은 법인기업 개인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합한 총 세 부담과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을 산출한 것이며, 세 부담 산출을 위하여 다음의 상황을 가정함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남은 배당가능 이익을 100% 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 법인세율은 21%의 단일세율임
 - 법인소득은 100만달러이고 법인세를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외의 소득은 없으며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배당소득은 모두 적격 배당으로 가정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개인소득세 산출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독신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 12,950달러만 적용함

〈표 IV-5〉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미국)

(단위: 달러)

구 분	내 용			
주주(지분율)	A(3%)	B(10%)	C(20%)	D(67%)
소득금액	30,000	100,000	200,000	670,000
표준공제 ¹⁾	12,550	12,550	12,550	12,550
종합소득 과세표준	17,450	87,450	187,450	657,450
소득세 적용 세율	12%	22%	24%	37%
소득세 산출세액	1,889	14,856	37,204	206,006

주: 1) 2022년 독신 납세신고자의 표준공제금액임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IV-6〉 법인기업 개인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미국)

(단위: 달러)

구 분	내 용			
법인소득	1,000,000			
명목법인세율	21%			
법인세액	210,000			
배당가능이익 ¹⁾	790,000			
개인주주(지분율)	A(3%)	B(10%)	C(20%)	D(67%)
법인세액	6,300	21,000	42,000	140,700
배당소득	23,700	79,000	158,000	529,300
표준공제 ²⁾	12,950	12,950	12,950	12,950
종합소득 과세표준	10,750	66,050	145,050	516,350
배당소득 적용 세율	0%	15%	15%	20%
소득세	0	3,656	15,506	74,031
총 세 부담(법인세+소득세)	6,300	24,656	57,506	214,731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³⁾	4,412	9,800	20,302	8,725

주: 1) 배당가능이익 100%를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2) 2022년 독신 납세신고자의 표준공제금액임
 3)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6〉 개인주주 총 세부담금액과 〈표 IV-5〉의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액임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미국의 경우 개인주주 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합인 총 세 부담에서 개인기업 주주라면 부담했을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지분율 3%, 10%, 20%, 67%인 경우에 각각 4,412달러, 9,800달러, 20,302달러, 8,725달러로 산출되었음
- 미국의 경우 별도의 이중과세조정제도는 없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율(10~37%)에 비해 낮은 세율(0%, 15%, 2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배당소득에 대한 총 세 부담이 사업소득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IV-7>은 영국에서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소득을 분배받은 주주의 세 부담을 산출한 것이고, <표 IV-8>은 법인기업 개인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을 합한 총 세 부담과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을 산출한 것이며, 세 부담 산출을 위하여 다음의 상황을 가정함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100% 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 법인세율은 19% 단일세율임
 - 법인소득은 68만 파운드이고 법인세를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외의 소득은 없으며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개인소득세 산출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12,570파운드만 적용함

〈표 IV-7〉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영국)

(단위: 파운드)

구분	내 용			
주주(지분율)	A(3%)	B(10%)	C(20%)	D(67%)
소득금액	20,400	68,000	136,000	455,600
기본공제 ¹⁾	12,570	12,570	12,570	12,570
종합소득 과세표준	7,830	55,430	123,430	443,030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	20%	40%	40%	45%
소득세 산출세액	1,566	14,632	41,832	184,324

주: 1)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공제(2022/23 과세 연도) 금액임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IV-8〉 법인기업 개인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영국)

(단위: 파운드)

구 분	내 용			
법인소득	680,000			
명목법인세율	19%			
법인세액	129,200			
배당가능이익 ¹⁾	550,800			
개인주주(지분율)	A(3%)	B(10%)	C(20%)	D(67)
법인세 부담액	3,876	12,920	25,840	86,564
주주(지분율)	A(3%)	B(10%)	C(20%)	D(67%)
배당소득	16,524	55,080	110,160	369,036
기본공제 ²⁾	12,570	12,570	12,570	12,570
종합소득과세표준	3,954	42,510	97,590	356,466
배당공제	2,000	2,000	2,000	2,000
배당공제 후 과세표준	1,954	40,510	95,590	351,466
배당소득 적용 최고세율	8.75%	33.75%	33.75%	39.35%
소득세 산출세액	171	4,247	22,837	121,657
총 세 부담(법인세+소득세)	4,047	17,167	48,677	208,221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²⁾	2,481	2,535	6,845	23,898

주: 1) 배당가능이익 100%를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공제(2022/23 과세 연도) 금액임
 3)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8〉 개인주주 총 세부담금액과 〈표 IV-7〉의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액임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영국의 경우 개인주주 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합인 총 세 부담에서 개인기업 주주라면 부담했을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지분율 3%, 10%, 20%, 67%인 경우 각각에 대해 2,481 파운드, 2,535 파운드, 6,845 파운드, 23,898 파운드로 산출되었음
- 영국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율(20%, 40%, 45%)에 비해 낮은 세율(8.75%, 33.75%, 39.35%)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있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총 세 부담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 부담보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라. 법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 조사 대상국 모두 법인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법인 단계와 수취법인(주주) 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호주를 제외한 국가는 법인주주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과세 면제) 방법으로서 이중과세를 조정함²⁹⁵⁾
 - 우리나라는 출자법인의 지주회사 여부, 피출자법인의 상장 여부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함(30%~100%)
 - 미국은 출자법인의 기업유형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함(50%~100%)
 - 영국은 소규모법인과 비소규모법인을 구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봄(100% 익금불산입)

295)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미국은 '수입배당금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영국은 면제 분배(exempt distribution), 독일은 과세소득 면제(Einkommens außer Ansatz)라고 표현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 독일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나, 수입배당금의 5%는 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과세소득에 다시 가산(손금불산입)하므로 결과적으로 수입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 함
 - 호주는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방식과 동일하게 임퓨테이션 방식(배당세액공제 방식)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함
 - 즉 '배당에 귀속되는 법인세액(franking credit)'을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에 합산한 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franking credit을 공제함
- (익금불산입 요건) 조사 대상국 모두 법인주주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법인의 최소 지분율(지주회사인 경우에 한함) 및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미국과 호주는 보유기간 요건을 필요로 하며,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익금불산입 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법인을 소규모법인과 비소규모법인으로 구분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배당을 열거하고 있음
 - 독일은 최소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소 지분율 요건) 우리나라와 독일은 일정 비율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주권 상장법인 및 벤처기업인 경우 20%, 비상장법인의 경우 4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보유 요건은 없으며, 지주회사의 최소지분율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독일의 경우 해당 연도 초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최소 10%이상을 직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 10%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보유기간 요건)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의 경우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피출자법인(자회사)의 배당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미국은 배당락일로부터 45일 전일부터 91일 동안 납세자가 46일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다만 특정 우선주 주식의 경우 배당락일의 90일 전부터 시작된 181일의 기간 중 91일 이상 보유하여야 함
 - 호주는 최소 45일(특정 우선주의 경우 90일) 동안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최소지분율 및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으나 법인 규모에 따라 법인 규모에 따라 법인세 면제(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법인의 경우 내국법인 등²⁹⁶⁾으로부터 받는 배당으로서 특정 비배당 분배(certain non-dividend distributions)가 아니며 조세회피계획(tax advantage scheme)에 따른 배당이 아니어야 함
 - 비소규모법인의 경우 피지배법인, 상환불가능 보통주, 포트폴리오투자목적 주식,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으로, 특정비배당 분배가 아니며 조세절감을 의도하지 않은 거래로부터 발생한 분배에 해당하여야 함

- (익금불산입 제외) 한편 조사 대상국은 다음 특정 경우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특정유형의 법인세 감면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 미국은 부동산 투자신탁(REIT),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배당, 이자 성격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296) 이중 거주법인 제외하며, 적격지역(qualifying territory)에 위치한 특정외국법인(CFC)은 포함함

- 이자 성격의 배당이란 국내건설대출조합·상호저축은행·협동조합은행 등의 예금 또는 출금계좌에 대한 배당금을 말함
- 호주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전이익의 배당(unfranked dividend)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영국은 특정 비배당 분배 및 일정한 조세회피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분배는 익금불산입 하지 않음
- 독일은 지분율이 10% 미만인 법인의 주식, 주식발행법인이 배당지급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조세조약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특정 금융기관 및 건강보험·생명보험회사 등이 투자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표 IV-9〉 주요국의 법인주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요건 및 배제대상 비교

	익금불산입 요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최소지분율	보유기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벤처: 20% - 비상장: 40% • 일반회사: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기준일 3개월 이전에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및 특정유형의 법인세 감면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락일로부터 45일 전일부터 91일 동안 납세자가 46일 이상 보유 • 특정 우선주의 경우 배당락일의 90일 전부터 시작된 181일의 기간 중 91일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자신탁(REIT) 또는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배당 • 이자 성격의 배당²⁾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45일(특정 우선주의 경우 90일) 동안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전이익의 배당
영국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비배당 분배 및 조세회피 계획에 따른 배당

〈표 IV-9〉의 계속

	익금불산입 요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최소지분율	보유기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이 10% 미만인 법인이 받는 배당 • 주식발행법인이 배당지급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조세조약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 특정 금융기관 등³⁾이 투자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받는 배당⁴⁾

주: 1) 영국의 경우 별도의 요건은 없으나 법인 규모에 따라 면제(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법인: ①내국법인(이중 거주법인 제외하며, 적격지역(qualifying territory)에 위치한 특정 외국법인(CFC)은 포함)으로부터 받는 배당으로 ②특정 비배당 분배 및 조세회피계획에 따른 배당이 아닌 것
- 비소규모법인: ①지배법인, 상환불가능 보통주, 포트폴리오투자목적 주식,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②특정비배당 분배가 아니며 ③조세절감을 의도하지 않은 거래로부터 발생한 분배

2) 국내건설대출조합·상호저축은행·협동조합은행 등의 예금 또는 출금계좌에 대한 배당금을 말함

3) 건강보험·생명보험회사 포함

4) 단, 조세조약 또는 EU모자회사 지침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수입배당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비과세 대상임)

자료: 본문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익금불산입률) 임퓨테이션 방식을 적용하는 호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와 일반회사를 구분하여 보유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적용함

- 지주회사는 최소 지분율 40%(상장법인 등 및 벤처기업은 20%)를 기준으로 지분율 구간별로 80%, 90%,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일반법인은 최소 지분율 요건은 없으나 지분율 구간에 따라 30%, 50%,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미국은 법인주주의 기업 유형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

- 일반적으로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 50%, 지분율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65%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관계집단(affiliated group) 구성원(지분율 80%)이 수령하는 적격배당금 또는 소규모사업투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영국과 독일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익금불산입 하지만, 독일의 경우 수입배당금의 5%는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의제하여 과세소득에 가산(손금불산입)하므로 결과적으로 수입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 됨
- (차입금 지급이자 차감규정)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손금불산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피출자법인(자회사) 주식 적수가 출자법인(지주회사) 자산 총액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함
 - 미국은 지분율이 50% 미만(포트폴리오 주식)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
 - 독일은 수입배당금의 5%를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의제하여 과세소득에 가산(손금불산입)함
- (공제 한도) 미국과 호주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함
- 미국은 지분율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며, 법인이 당해 연도 운영업손실(NOL)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지분율이 20%인 경우, 과세소득과 100%공제가 허용되는 배당금(지분율 80% 이상 또는 소규모투자법인²⁹⁷)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의 차이금액 × 65%
 -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과세소득과 100%공제가 허용되는 배당금과의 차이금액 × 80%
 - 호주의 경우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할당받은 귀속법인세를 배당세액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음

297) 1958년의 소규모사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에 따라 운영되는 회사

- 배당지급법인 단계에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 주주에게 귀속법인세를 할당함

$$\bullet \text{ 한도액} = [\text{법인세 과세된 배당액} \times (\text{법인세율} / (1 - \text{법인세율}))]$$

〈표 IV-10〉 주요국의 법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비교

	이중과세 조정방식	익금불산입률	지급이자 차감 규정	익금불산입 한도
한국	•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 지주회사: 지분율에 따라 80%, 90%, 100% ¹⁾ • 일반회사: 지분율에 따라 30%, 50%, 100% ²⁾	• 피출자법인株式이 출자법인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해당 없음
미국	•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배당금공제)	• 지분율 20% 미만: 50% • 지분율 20% 이상: 65% • 관계법인 구성원 ³⁾ 또는 소규모투자법인: 100%	• 해당 없음 -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주식취득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 지분율 20%: (과세소득 -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 × 65% • 지분율 20% 미만: (과세소득 -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 × 80%
호주	• 임퓨테이션 (배당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할당받은 귀속법인세 ⁴⁾
영국	•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면제분배)	• 1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독일	•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과세소득면제)	• 지분율 10% 이상: 95% • 지분율 10% 미만: 0% (전액 익금산입)	• 해당 없음 - 수입배당금의 5%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의제하여 과세 소득에 가산(손금불산입)	• 해당 없음

주: 1)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음

- 지분 비율 80%(상장법인 등의 경우 40%) 이상: 100%
- 지분 비율 50%이상 80%미만(상장법인 등의 경우 30%이상 40%미만): 90%
- 지분 비율 40%(상장법인·벤처기업 20%) 이상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미만: 80%

2)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음

- 지분 비율 100%: 10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이상 100% 미만: 50%
- 지분 비율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30%) 미만: 30%

3) 지분율 80%이상인 경우를 말함

4) 배당지급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된 배당액 × [법인세율 ÷ (1 - 법인세율)]'을 한도로 하여 각 주주에게 귀속법인세를 할당함

자료: 본문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마.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분석

-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의 법인주주인 경우의 총 부담세액과 개인기업의 주주(개인)인 경우 부담하는 소득세액을 계산함²⁹⁸⁾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와 일반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함
 - 호주는 익금불산입이 아닌 임퓨테이션 방식을 운용하고 있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혼합한 소득세 체계로 인하여 비교세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함
 - 분석을 위하여 법인기업(지급법인) 단계와 법인주주 단계에서 각각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의 총 법인세 부담액에서 개인기업 형태의 주주로서 부담하는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으로 정의함
 -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구간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에서 다양한 세율 구간에 속한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및 지분율을 국가별로 상이하게 설정하였고, 따라서 국가 간 비교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 <표 IV-11>에서는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주주별 소득세 부담액을, <표 IV-12> 및 <표 IV-13>에서는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법인주주가 지주회사 및 일반회사인 경우의 법인주주별 총 부담세액 및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을 각각 계산함²⁹⁹⁾
 - 법인기업의 법인주주의 총 부담세액은 법인기업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으로 분배한 경우의 각 법인주주에 귀속되는 총 부담세액을 산출한 것임

298) 기본적인 산출방식은 김진수(2004)를 기초로 하며, 최근의 조세제도 및 국가별 조세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함

299) <표 IV-4>와 계산 구조는 동일하나 지분율을 달리 가정하여 재계산함

- 세 부담 계산 및 비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함
 - 법인기업의 소득은 300억이며,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는 것으로 가정함(배당률=100%)
 - 주주 A, B, C, D는 모두 법인으로 각각의 지분율은 0.07%, 20%, 30%, 49.93%로 가정하며, 수입배당금 외의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계산과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세 산출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기본공제(1,500,000원)만 적용함

〈표 IV-11〉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계산(한국)

(단위: 원)

구분	내용			
소득금액	30,000,000,000			
주주(지분율)	0.07%	20.00%	30.00%	49.93%
소득금액	21,000,000	6,000,000,000	9,000,000,000	14,979,000,000
기본공제 ¹⁾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19,500,000	5,998,500,000	8,998,500,000	14,977,500,000
소득세 적용 세율	15%	45%	45%	45%
소득세 산출세액	1,845,000	2,633,925,000	3,983,925,000	6,674,475,000

주: 1) 개인의 기본공제 금액 1,500,000원을 차감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 법인주주의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지주회사와 일반회사로 구분하여 계산하였으며,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모두 지분율이 0.07%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로 나타남
- 지주회사인 법인주주의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지분율이 0.07%, 20%, 30%, 49.93%인 경우에 각각 3,648,180원, -1,227,365,000원, -2,007,005,000원, -3,588,801,000원으로 계산됨

- 일반회사인 법인주주의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지분율이 0.07%, 20%, 30%, 49.93%인 경우에 각각 3,648,180원, -750,965,000원, -1,435,325,000원, -2,419,468,400원으로 계산됨

〈표 IV-12〉 법인기업 법인주주(지주회사)의 총 부담세액 계산(한국)

(단위: 원)

구 분	내 용			
법인소득	30,000,000,000			
명목 법인세율	10%/ 20% / 22%			
법인세액	6,180,000,000			
배당가능이익 ¹⁾	23,820,000,000			
주주(지분율)	A(0.07%)	B(20.00%)	C(30.00%)	D(49.93%)
법인세 부담액(①) ²⁾	4,326,000	1,236,000,000	1,854,000,000	3,085,674,000
수취배당액 ³⁾	16,674,000	4,764,000,000	7,146,000,000	11,893,326,000
익금불산입률	30%	80%	90%	100%
익금불산입액	5,002,200	3,811,200,000	6,431,400,000	11,893,326,000
과세표준	11,671,800	952,800,000	714,600,000	-
법인세율	10%	10%/ 20%	10%/ 20%	10%
법인세액(②)	1,167,180	170,560,000	122,920,000	0
총 세 부담(①+②)	5,493,180	1,406,560,000	1,976,920,000	3,085,674,000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⁴⁾	3,648,180	-1,227,365,000	-2,007,005,000	-3,588,801,000

주: 1) 배당가능이익의 100% 배당금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법인기업(배당지급법인)의 법인세액×주주 지분율

3) 전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소득으로 가정함

4)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12〉의 법인주주 총 세부담금액과 〈표 IV-11〉의 개인기업 주주(개인)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이로 계산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IV-13〉 법인기업 법인주주(일반법인)의 총 부담세액 계산(한국)

(단위: 원)

구분	내용			
법인소득	30,000,000,000			
명목 법인세율	10% / 20% / 22%			
법인세액	6,180,000,000			
배당가능이익 ¹⁾	23,820,000,000			
주주(지분율)	A(0.07%)	B(20.00%)	C(30.00%)	D(49.93%)
법인세 부담액(①) ²⁾	4,326,000	1,236,000,000	1,854,000,000	3,085,674,000
수취배당액 ³⁾	16,674,000	4,764,000,000	7,146,000,000	11,893,326,000
익금불산입률	30%	30%	50%	50%
익금불산입액	5,002,200	1,429,200,000	3,573,000,000	5,946,663,000
과세표준	11,671,800	3,334,800,000	3,573,000,000	5,946,663,000
법인세율	10%	10% / 20%	10% / 20%	10% / 20%
법인세액(②)	1,167,180	170,560,000	122,920,000	1,169,332,600
총 세 부담(①+②)	5,493,180	1,882,960,000	2,548,600,000	4,255,006,600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⁴⁾	3,648,180	-750,965,000	-1,435,325,000	-2,419,468,400

주: 1) 배당가능이익 100% 배당금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법인기업(배당지급법인)의 법인세액×주주 지분율

3) 배당가능이익×주주 지분율로 계산하며 전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소득으로 가정함

4)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13〉의 법인주주 총 세부담금액과 〈표 IV-11〉의 개인기업 주주(개인)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이로 계산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인 것은 주주 입장에서 이중과세가 아니라 과소과세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주의 형태가 개인기업인 것보다 법인기업인 경우가 주주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법인주주의 법인세율보다 개인기업인 경우의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주주의 입장에서 지분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개인보다는 법인의 형태를 선호하게 됨

- 지분율이 20%, 30%, 49.93%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로 산출되었으며, 이 경우 법인형태의 주주가 개인형태보다 유리함

- 한편 법인주주의 경우에도 개인주주와 유사하게 지분율이 낮을수록(즉,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높게 나타남
- <표 IV-14>는 미국 법인기업의 법인주주에 귀속되는 총 부담세액 및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을 계산한 것임
 - 배당지급 법인의 소득은 100만달러, 법인주주의 지분율은 각각 3%, 10%, 20%, 67%로 가정함
 - 배당지급 법인은 법인세를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분배하며, 주주는 수입 배당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함

<표 IV-14> 법인기업 법인주주의 총 부담세액 계산(미국)

(단위: 달러)

구 분	내 용			
법인소득	1,000,000			
명목 법인세율	21%			
법인세액	210,000			
배당가능이익 ¹⁾	790,000			
주주(지분율)	A(3%)	B(10%)	C(20%)	D(67%)
법인세 부담액(①) ²⁾	6,300	21,000	42,000	140,700
수취배당액 ³⁾	23,700	79,000	158,000	529,300
익금불산입률	50%	50%	65%	65%
익금불산입액	11,850	39,500	102,700	344,045
과세표준	11,850	39,500	55,300	185,255
법인세율	21%	21%	21%	21%
법인세액(②)	2,489	8,295	11,613	38,903
총 세 부담(①+②)	8,789	29,295	53,613	179,603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⁴⁾	6,900	14,439	16,409	-26,403

주: 1) 배당가능이익 100% 배당금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법인기업(배당지급법인)의 법인세액×주주 지분율

3) 전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소득으로 가정함

4)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14>의 법인주주 총 세부담금액과 <표 IV-5>의 개인 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액으로 계산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미국의 법인주주는 지분율이 3%, 10%, 20%, 67%일 때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각각 6,900달러, 14,439달러, 16,409달러, -26,403달러로 계산됨
-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14>의 총 세부담액과 <표 IV-5>의 개인 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지분율이 낮을수록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높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에도 주주가 일정 지분율(소득) 이상인 경우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로 나타남
 - 계산 사례에서 지분율이 67%일 때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로 나타나며, 이 경우 주주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형태를 선호할 수 있음
- <표 IV-15>는 영국의 법인기업의 법인주주에 귀속되는 총 부담세액 및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을 계산한 것임
- 배당지급 법인의 소득은 68만 파운드, 법인주주의 지분율은 각각 3%, 10%, 20%, 67%로 가정함
 - 배당지급 법인은 법인세를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분배하며, 주주는 수입 배당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함

〈표 IV-15〉 법인기업 법인주주의 총 부담세액 계산(영국)

(단위: 파운드)

구 분	내 용			
법인소득	680,000			
명목 법인세율	19%			
법인세액	129,200			
배당가능이익 ¹⁾	550,800			
주주(지분율)	A(3%)	B(10%)	C(20%)	D(67%)
법인세 부담액(①) ²⁾	3,876	12,920	25,840	86,564
수취배당액 ³⁾	16,524	55,080	110,160	369,036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100%

〈표 IV-15〉의 계속

구 분	내 용			
	익금불산입액	16,524	55,080	110,160
과세표준	-	-	-	-
법인세율	19%	19%	19%	19%
법인세액(②)	-	-	-	-
총 세 부담(①+②)	3,876	12,920	25,840	86,564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⁴⁾	2,310	-1,712	-15,992	-97,760

주: 1) 배당가능이익 100% 배당금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법인기업(배당지급법인)의 법인세액×주주 지분율
 3) 배당가능이익×주주 지분율로 계산하며 전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소득으로 가정함
 4)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15〉의 법인주주 총 세부담금액과 〈표 IV-7〉의 개인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영국의 법인주주는 지분율이 3%, 10%, 20%, 67%인 경우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각각 2,310파운드, -1,712파운드, -15,992파운드, -97,760파운드로 계산됨
-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표 IV-15〉의 총 세부담액과 〈표 IV-7〉의 개인 기업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지분율이 낮을수록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은 높게 나타남(세 부담 역진성)
- 영국의 경우에도 주주가 일정 지분율(소득) 이상인 경우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로 나타남
 - 계산 사례에서 지분율이 각각 10%, 20% 67%일 때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로 나타나며, 이 경우 주주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형태를 선호할 수 있음
- 국가별로 법인소득의 크기와 지분율 가정이 상이하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 일정 지분율(소득) 이상인 법인주주의 경우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로 나타남

- 이는 법인기업의 법인주주의 세 부담이 개인기업인 경우의 세 부담보다 낮으므로 주주가 개인보다는 법인의 형태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
- 법인주주는 배당의 최종 귀속자가 아니므로, 법인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음수인 것이 곧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2. 시사점

가. 개인주주의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

- 우리나라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임퓨테이션 방식이란 배당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하는 방식임
- 현재의 이중과세조정제도는 귀속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배당가산율을 법인세의 낮은 세율인 10%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고 있어 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지급배당에 대해서는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즉, 현재 법인세율은 10%, 20%, 22%, 25%의 4단계 구조임에도 배당가산율은 10%의 세율을 기초로 산출한 $11\% (= 10\% / (1 - 10\%))$ 를 적용함
 - 이는 2011년 당시 2단계 법인세율(10%, 22%) 체계에서 정해진 비율이고 현재 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4단계 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높은 세율이 22%에서 25%로 상향조정되었음
 - 법인세 높은 세율인 2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33\% (= 25\% / (1 - 25\%))$ 의 배당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배당가산율로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 중 일부만 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조사 대상국의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저율과세를 통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고 독일은 개인 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고 있음
 - 호주는 배당에 귀속되는 실제 법인세액을 소득에 가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완전 임퓨테이션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호주를 제외한 조사 대상 국가 중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는 나라는 없음
 - 이중과세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과 유보 간의 조세 비중립성으로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호하게 되어 배당정책을 왜곡할 수가 있고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이 높아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배당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전체 배당소득의 94% 정도 차지하고 있어 수직적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³⁰⁰⁾

- 단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임퓨테이션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낮은 세율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실효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정효과가 개선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호주에서 시행하는 완전한 임퓨테이션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완전한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당 지급법인 또는 과세당국 단계에서 실무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과도한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음

300)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21 국세통계연보』 표 <4-4-13 배당소득 분위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 과세 연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자(1,123,363명)의 배당소득 금액은 26조 5,381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28조 566억원의 약 94%에 해당함

- 다만,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2단계 누진세율 구조(10%, 22%)로 개정될 예정에 있어 법인세율이 개정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나. 이중과세조정제도의 복잡성

- 현재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는 조사 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구조임
 - 제도가 복잡한 것은 임퓨테이션 방식 자체의 문제와 2천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수취배당액에 배당가산율을 적용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출한 후 배당세액공제액은 다시 귀속법인세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은 2천만원 초과분 배당총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2천만원 초과분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 포함)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경우 증가하는 세액 상당액을 의미함³⁰¹⁾
 - 즉, 배당세액공제액은 귀속법인세액 전체가 아니라 분리과세에 의한 산출세액에 비해 종합과세에 의한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우리나라에 비해 조사 대상국의 제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임
 - 임퓨테이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보면, 배당 지급법인 단계에서 실제 귀속법인세액을 산출하여 배당금명세서를 통해 주주에게 전달하면 주주단계에서는 배당금명세서에 기재된 귀속법인세액을 가산하여 세액산출 후 다시 동일한

301) 임상엽·정정운(2021), p. 354

금액을 세액공제함

-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므로 귀속법인세 산출이 단순하고 주주단계에서도 모든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주주단계에서의 계산 과정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음

- 저율과세하는 미국의 경우 별도의 조정이 없고, 영국은 저율과세하면서 일률적으로 2,000파운드를 공제하는 방식이고 독일의 사업용 지분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임이므로 비교적 단순함

- 현재 OECD 국가 중 임퓨테이션 제도를 적용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멕시코 6개국에 불과하고³⁰²⁾ 상당수의 국가는 과거 임퓨테이션 방식을 적용했으나 부분과세 또는 저율과세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개정하였음³⁰³⁾

- 영국은 1997년과 1999년의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임퓨테이션 제도를 폐지하였음
 - 1997년에는 연금기금과 같은 비과세 주주들에게 귀속법인세 환급을 폐지하였고 1999년에는 배당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회사가 법인세를 선납하는 ACT (Advance Corporation Tax)제도를 폐지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면서 임퓨테이션 제도는 폐지하였음

- 임퓨테이션의 폐지로 인한 개인주주에 대한 순세금 효과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당시 영국은 법인세율을 33%에서 1999년 30%로 인하하였음

- 독일은 2001년 완전임퓨테이션 제도를 폐지하고 50%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당시 독일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임퓨테이션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것이 임퓨테이션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음

302) 홍범교·구문정·홍성희(2016), p. 56

303) Ainsworth(2016), pp. 58~63

- 프랑스도 2005년 완전임퓨테이션제도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의 50%만 과세하는 제도로 개정하였음
 - 이로 인해 한계세율 상위 투자자의 경우 배당에 대한 유효세율이 29%에서 3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은 2004년 35.4%에서 2006년 34.4%로 인하되었음
 - 프랑스도 ECJ의 권고가 임퓨테이션 제도의 폐지에 영향이 있었다고 함
 - 그 외 임퓨테이션 제도를 적용하다 폐지한 국가로는 아일랜드(1999년), 이탈리아(2004년), 핀란드(2005년), 노르웨이(2006년) 등이 있음
- 여러 OECD 국가들이 과거에 임퓨테이션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현재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현재의 임퓨테이션 제도는 복잡한 계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조정이 미흡하여 조세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준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임퓨테이션 방식을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전환이 기업 및 주주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현행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검토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영국은 전액 면제, 독일은 95%를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률, 특히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미국의 익금불산입률은 영국과 독일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명목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률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명목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고 단일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 체계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더 낮아지게 됨
- 또한 우리나라는 출자법인의 지주회사 여부, 피출자법인의 상장 여부에 따라 지분율 요건이 모두 상이하며, 그에 따라 익금불산입률도 차등적으로 적용하므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익금불산입률 적용이 복잡하고 법인 형태 간 불균형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동일한 지분율을 가진 출자법인이라 하더라도 지주회사인지 일반법인인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다르게 적용됨
 - 또한 출자법인의 유형과 지분율이 동일하더라도 피출자법인이 상장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다르게 적용됨
 - 해외 제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형태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수단으로서 익금불산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ECD 주요 11개국³⁰⁴⁾을 살펴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국가의 익금불산입률은 95~ 100% 수준임³⁰⁵⁾
 -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는 일정 요건(최소지분율 또는 지분금액,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100% 면제(익금불산입)하며,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이스라엘의 경우 특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요건 없이 100% 익금불산입 함
 - 스페인은 별도의 요건 없이 95%(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100%) 익금불산입함

304) OECD 주요 11개국으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벨기에,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스페인을 조사함. 이하 동일

305) IBFD, 각 국가별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https://research.ibfd.org/#/search?N=3+10+500002+6186+4293738526&Ne=7487&Nu=global_rollup_key&Np=2&Ns=sort_country_one|0||subcategory|0||sort_jurisdiction|0||sort_state_province|0, 검색일자: 2022. 10. 6

- 스위스, 프랑스, 노르웨이는 독일과 유사하게 수입배당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므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해당 비율만큼 낮아짐
 - 스위스는 수입배당금의 5%(관련된 실제 비용이 5%보다 낮은 경우 실제 비용 인정)를 손금불산입함
 - 노르웨이는 수입배당금의 3%를 손금불산입하며(3% clawback rule), 지분을 90% 이상을 보유한 기업 간 배당에 대해서는 clawback rule을 적용하지 않음
 - 프랑스는 수입배당금의 5%(또는 1%³⁰⁶)를 손금불산입함
 - 일본은 법인주주의 지분율 및 지배목적에 따라 20%, 50%,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출자 비율 100%인 완전자회사 또는 출자 비율 1/3 초과 100% 미만인 관련 법인의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며, 관련 법인의 경우만 배당 등의 금액과 관련된 이자 상당액을 공제(손금불산입)함
 - 출자 비율이 5% 이하의 비지배 목적 주식에서 기인한 배당은 2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상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출자 비율이 5% 초과 1/3 이하 법인의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 법인 소득은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관점에서, 법인주주는 최종 개인 주주에게 귀속되기 위한 중간 단계 법인이므로 법인주주 단계의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질수록 최종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부담은 더욱 커짐
 - 선행 연구에서는 법인기업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한 경우와 법인기업이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의 개인주주(최종 귀속자)의 총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전자보다 후자의 이중과세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음³⁰⁷⁾
-
- 306)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연결그룹 내 배당금 및 내국법인이 세금연결그룹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한 EEA자회사로부터 받은 그룹 내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의 1%를 손금불산입액으로 함

- 즉 개인주주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거치는 중간 단계의 법인이 많아지는 경우 이중 과세뿐만 아니라 다중과세로도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도입 취지가 이중과세 조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간의 차등을 폐지하고,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현재 수준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일반법인보다 지주회사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더 높게 적용한 이유는 1999년 지주회사제도 도입 초기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별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지주회사에 비해 낮은 편이며 상당 기간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주주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주주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질수록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짐.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지주회사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경우, 기업 형태를 선택할 때 선호도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출자법인의 기업 형태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차등을 없애고 피출자법인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 비율만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률을 규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지분 비율 구간별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으며, 이대로 개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07) 이와 관련하여 전병욱(2020)은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의 비공개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불안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지분 비율 50% 이상: 100%
 - 지분 비율 30% 이상 50% 미만: 80%
 - 지분 비율 30% 미만: 30%
- 다만 경과 규정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높은 익금불산입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아가 현행 규정상 지분율의 구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차등을 두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간별로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할 경우 지분율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됨
- 예를 들어 현행 제도하에서 일반법인의 피출자법인(상장)에 대한 지분율이 29%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지만, 지분율이 1%만 높아도(즉 지분율 30%)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음
- 지분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독일 및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과 같이 최소 지분율 요건만을 규정함으로써 익금불산입률의 구간별 차등을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20.
- _____, 『2021 국세통계연보』, 2021.
- 김무열,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2호, pp. 195~227,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 김진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12.
- _____,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 부담 비교 -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v.12 no.4 no.130, pp. 6~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 송동진, 「사외유출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8.
-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오윤·임동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pp. 63~92, 2013. 2.
-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 연구센터, 2020. 8.
- 이영환, 「이중과세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학회보』, 제5권 제1호, 한국의회학회, pp. 78~113, 2020.
- 이종교·황남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 vol.10, no.2, 통권 25호, pp. 233~274,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 이창기,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삼일인포마인, 2012.
-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2021.

정유석, 「금융소득의 범위조정을 통한 이원적 소득과세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 회계연구』, 제89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pp. 22~44

전병목·박수진·서동연, 「주요국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 주주 과세효과」,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21. 9.

전병목·이승식, 『주요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11.

전병욱,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산정책연구』, vol.9 no.3 통권 19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pp. 31~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세정연구센터, 2019. 3.

한만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제8권 제2호, 한국 세법학회, 2002, pp. 440~472

홍범교·구문정·홍성희,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6. 12.

Andrew Ainsworth, “Dividend Imputation: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The Finsia Journal of Applied Finance*, JASSA, pp. 58~63, 2016.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 “Welcome to the German Dual Income Tax”, pp. 837~841, 200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삼일인포마인, <https://www.samili.com/>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Bloomberg Law, <https://www.bloomberglaw.com/>

CCH, <https://answerconnect.cch.com/>

FT Adviser, <https://www.ftadviser.com/>

fima.de, <https://www.firma.de/>

IBFD, <https://research.ibfd.org/#/>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

Jones Day Reavis & Pogue, <https://www.jonesday.com/>

Low Income Tax Refrom Group, <https://www.litr.org.uk/>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

세법연구 22-04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

발 행 2022년 10월 31일
저 자 전병목 · 송은주 · 서동연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미래기획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BN 979-11-6655-163-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